

| SRI-전략-2024-03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현안 연구

A Research on current issues in the metropolitan overcrowding control zone

양은순·강태욱·임채실

차례

제1장 연구 개요

| | |
|--------------------|---|
| 제1절 연구의 개요 | 1 |
| 제2절 수도권정비계획법 | 3 |
| 제3절 주요 규제 | 7 |

제2장 주요 이슈

| | |
|------------------------|----|
| 제1절 수도권 규제의 실효성 | 11 |
| 제2절 수도권 권역 내 역차별 | 13 |
| 제3절 수도권 규제의 악영향 | 16 |

제3장 해외사례 분석

| | |
|-------------------------|----|
| 제1절 일본 | 23 |
| 제2절 프랑스 | 32 |
| 제3절 영국 | 36 |
| 제4절 해외사례 종합 및 시사점 | 39 |

제4장 기업 인식조사

| | |
|-------------------|----|
| 제1절 조사 개요 | 45 |
| 제2절 조사 결과 | 48 |
| 제3절 인식조사 종합 | 71 |

제5장 수도권 규제완화 방향 및 전략

| | |
|--------------------|----|
| 제1절 규제완화 필요성 | 75 |
| 제2절 규제완화 방향 | 78 |
| 제3절 규제완화 전략 | 80 |

표차례

| | |
|---|----|
| 표 1-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 4 |
| 표 1-2 수도권정비법 규제 개요 | 7 |
| 표 1-3 수도권 공장이전·증설 허용 범위 | 8 |
| 표 2-1 수도권 권역별 사업체 수 현황 | 14 |
| 표 2-2 2022년 합계출생률 | 16 |
| 표 2-3 실업률, 아파트가격, 출생률 간 장기 상관관계(SVAR) | 18 |
| 표 3-1 일본 수도권 정책구역 | 25 |
| 표 3-2 일본 수도권 정비계획 변화 | 28 |
| 표 3-3 프랑스 수도권 규제 정책 변화 | 32 |
| 표 3-4 도시연대 및 재생에 관한 법률(SRU) | 33 |
| 표 3-5 영국 수도권 규제 정책 변화 | 36 |
| 표 3-6 수도권 정책 변화 과정 해외 사례 | 40 |
| 표 4-1 응답기업 특성표 | 47 |
| 표 4-2 (관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인지도 | 48 |
| 표 4-3 (관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피해 경험 여부 | 50 |
| 표 4-4 (관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 여부 | 51 |
| 표 4-5 (관내) 타 지역 이전 고려 경험 여부 | 52 |
| 표 4-6 (관내) 타 지역 이전 고려 이유 | 53 |
| 표 4-7 (관내) 타 지역 이전 비고려 이유 | 54 |
| 표 4-8 (관외) 주 사업장 위치 | 56 |
| 표 4-9 (관외) 수원시 내 기업활동 의향 여부 | 57 |
| 표 4-10 (관외) 수원시 기업활동 의향/비의향 이유 | 58 |
| 표 4-11 (관외) 수원시 이전 고려 경험 여부 | 59 |
| 표 4-12 (관외) 수원시 이전 고려 이유 | 61 |
| 표 4-13 (관외) 수원시 이전 비고려 이유 | 62 |
| 표 4-14 (관외) 종과세 제도 개선 완화가 기업활동에 주는 영향 | 63 |
| 표 4-15 (관외) 종과세 제도 개선 완화시 촉매제 가능성 | 64 |

| | |
|---|----|
| 표 4-16 (관외) 종과세 제도 개선시 수원시 내 신규법인 설립/지점설치 의향 | 66 |
| 표 4-17 (관외) 수원시 입지 위한 필요 및 개선사항 | 67 |
| 표 4-18 기업 운영 애로사항 | 68 |
| 표 4-19 정책적 지원 필요사항 | 69 |
| 표 5-1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특징 | 75 |
| 표 5-2 수도권정비계획의 성격과 위상 | 76 |
| 표 5-3 수도권 규제완화 전략 | 80 |
| 표 5-4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 80 |

그림차례

| | |
|--|----|
| 그림 2-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비율 및 GRDP 비중 | 11 |
| 그림 2-2 청년실업률 추이 | 12 |
| 그림 2-3 수도권-비수도권 간 불평등 지수 | 12 |
| 그림 2-4 수도권 권역별 인구 증가율 및 경제활동 인구 추이 | 13 |
| 그림 2-5 수도권 권역별 1인당 GRDP 및 GRDP 증가율 | 13 |
| 그림 2-6 수도권 권역별 산업구조 | 14 |
| 그림 2-7 권역별 실업률 및 도시공업지역면적 | 15 |
| 그림 2-8 권역별 재정자립도 추이 | 15 |
| 그림 2-9 2022년 합계출생률 | 16 |
| 그림 2-10 아파트 매매가격(평균단위) | 17 |
| 그림 2-11 출생률 분산분해 | 18 |
| 그림 2-12 국내기업 및 제조업 해외진출 현황 | 19 |
| 그림 2-13 해외에 본사를 둔 한국 스타트업 | 20 |
| 그림 2-14 IMD 국가경쟁력 종합순위 추이 | 20 |
| 그림 3-1 일본의 대도시와 수도권 | 24 |
| 그림 3-2 일본 수도권 정책구역 구분 | 26 |
| 그림 3-3 일본 국토계획의 체계 | 26 |
| 그림 3-4 일본 공업단지 조성사업 구조 | 29 |
| 그림 3-5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의 1인당 GDP 및 출산율 비교 | 39 |
| 그림 4-1 (관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인지도 | 48 |
| 그림 4-2 (관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피해 경험 여부 | 50 |
| 그림 4-3 (관내) 타 지역 이전 고려 경험 여부 | 51 |
| 그림 4-4 (관내) 타 지역 이전 고려 이유 | 53 |
| 그림 4-5 (관내) 타 지역 이전 비고려 이유 | 54 |
| 그림 4-6 (관외) 주 사업장 위치 | 56 |
| 그림 4-7 (관외) 수원시 내 기업활동 의향 여부 | 57 |
| 그림 4-8 (관외) 수원시 이전 고려 경험 여부 | 59 |

| | |
|--|----|
| 그림 4-9 (관외) 수원시 이전 고려 이유 | 60 |
| 그림 4-10 (관외) 수원시 이전 비고려 이유 | 61 |
| 그림 4-11 (관외) 종과세 제도 개선 완화가 기업활동에 주는 영향 ... | 63 |
| 그림 4-12 (관외) 종과세 제도 개선 완화시 촉매제 가능성 | 64 |
| 그림 4-13 (관외) 종과세 제도 개선시 수원시 내 신규법인 설립/지점설치 의향 | 65 |
| 그림 4-14 기업 운영 애로사항 | 67 |
| 그림 4-15 정책적 지원 필요사항 | 69 |
| 그림 5-1 수도권정비계획의 성격 및 위상 | 76 |
| 그림 5-2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 국토 구상 | 78 |
| 그림 5-3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79 |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개요

제2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절 주요 규제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이 4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 필요
 - 수정법 및 관련 규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목적 달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대안 검토를 통한 기존 수정법의 개정 및 개편 방향 검토, 관련된 국가도시계획 간 위계관계 검토 필요
- 수원시를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지역, 기타 수도권, 비수도권지역들과의 수정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현가능한 구체적 개정 방향성 도출 필요

2. 연구목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의 문제점 및 불합리성 검토로 규제 완화 필요성 제시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정법의 권역별 영향 분석(1인당 GRDP, 인구, 재정, 실업률, 출생률, 주택가격, 실업률 등)
- 규제완화 당위성 제시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정 추진을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 개정 현실화 가능성 확대
- 종과세 완화 등 수원시 차원의 구체적 대안과 현실화 방안 제시

3. 연구방법

- 수정법 관련 세부 현황 분석 : 연차별 개정 내용, 구역 변경내역, 구역설정 기준, 권역별 규제 등 세부 내용 검토
- 과밀억제권역 지역별 실태분석 : 인구, 출산율, GRDP, 산업, 재정 등
- 과밀억제권역 해당 지자체 현황 분석 : 개별 지역별 현황, 통합현황, 성장관리권역과의 비교, 수도권, 비수도권 간 비교, 국가균형발전 지표 분석 등

4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현안 연구

- 해외사례 분석 : 일본, 영국, 프랑스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기업 인지도 설문 조사 및 FGI : 기업대상 인지도 조사를 통해 규제에 대한 인지도 검토 및 기업 이전의 실질적 수요 검토
-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운영 : 대안 발굴을 위한 전문가 자문, 학술포럼, 과밀억제권역 지역연합총회 운영 등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학술포럼 운영 : 전문가, 시민, 국회의원 등 이슈 공유 및 확산

| 연구방법 | 주요 연구내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포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시민, 국회의원 등 이슈 공유 및 확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밀억제권역 지역연합 총회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 지자체 중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밀억제권역 지역별 실태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출산율, GRDP, 산업 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사례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프랑스, 일본 사례 분석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및 유사연구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법 관련, 국가균형발전 관련 선행·유사연구 분석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법 규제 완화, 국토균형발전 대안 발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인지도 조사 및 FG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법 및 과밀억제권역 규제 인지도 • 규제에 따른 피해사례 • 실질적으로 규제가 문제인지, 다른 문제는 무엇인지 • 수원시로의 이전에 뭐가 가장 중요한지 등 |

제2절 수도권정비계획법

1. 정의 및 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¹⁾

□ 수도권 권역 : 권역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함

○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대상지역 :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시흥시 일부, 남양주시 일부

○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대상지역 : 오산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용인시 일부, 파주시, 안성시 일부, 김포시, 화성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시흥시 일부, 남양주시 일부

○ 자연보전권역

-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대상지역 : 이천시, 남양주시 일부, 용인시 일부,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광주시, 안성시 일부

1)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1조 (목적)

표 1-1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
| <p>1. 서울특별시</p> <p>2. 인천광역시 (제외 :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p> <p>3. 의정부시</p> <p>4. 구리시</p> <p>5. 남양주시 (해당 :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데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p> <p>6. 하남시</p> <p>7. 고양시</p> <p>8. 수원시</p> <p>9. 성남시</p> <p>10. 안양시</p> <p>11. 부천시</p> <p>12. 광명시</p> <p>13. 과천시</p> <p>14. 의왕시</p> <p>15. 군포시</p> <p>16. 시흥시 (제외 :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p> | <p>1. 인천광역시 (해당 :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p> <p>2. 동두천시</p> <p>3. 안산시</p> <p>4. 오산시</p> <p>5. 평택시</p> <p>6. 파주시</p> <p>7. 남양주시 (해당 : 별내동, 와부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p> <p>8. 용인시 (해당 : 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북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p> <p>9. 연천군</p> <p>10. 포천시</p> <p>11. 양주시</p> <p>12. 김포시</p> <p>13. 화성시</p> <p>14. 안성시 (해당 : 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송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p> <p>15.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p> | <p>1. 이천시</p> <p>2. 남양주시 (해당 :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p> <p>3. 용인시 (해당 : 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p> <p>4. 가평군</p> <p>5. 양평군</p> <p>6. 여주시</p> <p>7. 광주시</p> <p>8. 안성시 (해당 :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울곡리·내장리·배태리)</p> |

자료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6. 20.>

2.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개정 연혁²⁾

□ 제정(1982.12.31. 법률 제3600호, 시행 1983.7.1.)

-
- ① 수도권의 인구규모·산업배치·토지이용·도시정비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그 결정절차를 정함.
 - ② 수도권을 이전촉진권역·제한정비권역·개발유도권역·자연보전권역 및 개발유보권역으로 세분할 수 있도록 함.
 - ③ 수도권안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에 저촉되는 토지이용계획·건설계획 및 개발계획을 제한하도록 하되, 국가안보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사와 건설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함.
 - ④ 학교, 공장, 업무용건축물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정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조성한 대지의 우선분양과 기존인구집중유발시설 이전적지의 매수등 지원제도를 마련함.
 - ⑤ 수도권의 건전한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정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⑥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전촉진권역·제한정비권역 등에서 중요공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수도권인구집중현상에 미칠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자료 : 석호영(2023) 「수도권 정비계획에 관한 법적 검토」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권정비계획법」

□ 1차 전부개정(1994.1.7. 법률 제4721호, 시행 1994.4.8.)

-
- ① 종전에는 수도권의 권역을 이전촉진권역·제한정비권역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조정함.
 - ②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새로운 공업지역의 지정은 엄격히 통제하되, 기존 공업지역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위치변경과 공업용지조성사업은 허용하도록 함.
 - ③ 수도권지역의 주택공급확대와 균형개발을 위하여 성장관리권역에서의 중소규모의 주택조성사업 및 관광조성사업 등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없이 수도권정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함.
 - ④ 종전에는 수도권 안의 업무시설·판매시설 등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축을 물리적으로 억제하는 직접규제방법을 취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신축·증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경제적·간접적인 규제 방법으로 전환하며, 징수된 과밀부담금은 지역의 발전과 지방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함.
 - ⑤ 공장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개별적인 규제는 완화하되, 수도권에 과다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동 시설을 신설·증설할 수 있는 총면적의 한도를 정하여 운용하도록 함.
-

자료 : 석호영(2023) 「수도권 정비계획에 관한 법적 검토」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권정비계획법」

□ 2차 일부개정(2004.12.21. 법률 제7308호, 시행 2005.7.1.)

-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건축물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 용도변경일을 기준으로 과밀부담금을 산정하도록 개정
- 수도권정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정부 위원회정비계획)

2) 석호영(2023) 자료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권정비계획법」 자료 기반으로 작성

□ 3차 전부개정(2008.3.21. 법률 제8977호, 시행 2008.3.21.)

-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법 문장 한글로 수정, 쉬운 용어 사용, 문장 체계 정비 등)

□ 4차 일부개정(2011.5.19. 법률 제10670호, 시행 2011.8.20.)

- 수도권정비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
-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5차 일부개정(2017.1.17. 법률 제14543호, 시행 2017.1.17.)

-
- ① 과밀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할 경우「국세징수법」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제4항).
 - ② 과밀부담금 납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15조 제6항).
 - ③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촉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요건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제22조의2 제1항 제1호).
 - ④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두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2 신설).
-

자료 : 석호영(2023) 「수도권 정비계획에 관한 법적 검토」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권정비계획법」

□ 6차 일부개정(2018.6.12. 법률 제15680호, 시행 2018.6.12.)

-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 및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신설 및 증설에 대한 총량규제 제도가 있으나 매년 개발실적보다 총허용량이 과도하게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명무실
- 총 허용량과 이에 대한 산출 근거를 고시하도록 하여 총량규제 제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

□ 7차 일부개정(2018.12.18. 법률 제16002호, 시행 2019.6.19.)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된 개발행위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 개발행위의 결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수도권정비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가 집계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

□ 8차 일부개정(2019.12.10. 법률 제16810호, 시행 2020.6.11.)

-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후 인구나 산업구조 등 정책환경이 변화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해부터 5년마다 이를 재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개정

제3절 주요 규제

1. 규제 개요

- 규제 대상 : 권역 내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대규모 개발사업
 - 인구집중유발시설 : 대학·일정규모 이상의 학교·공장·공공청사·업무용건축물·판매용 건축물·연수시설 등
 - 개발사업 : 일정규모 이상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관광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 규제 수단
 - 직접 규제 : 권역별 불가행위 규정
 - 간접 규제 : 심의를 통한 규제, 총량규제(건축 및 대학입학정원)
 - 경제적 규제 : 과밀부담금, 취득등록세·재산세 증과세, 특례 등 조세지원 배제

표 1-2 | 수도권정비법 규제 개요

| 유형 | 분류 | 내용 |
|-------|----------|---|
| 규제 대상 | 인구집중유발시설 | • 대학,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청사, 공장, 연수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복합시설 등의 신증설, 용도변경 |
| | 개발사업 | •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
| 규제 수단 | 직접 규제 | • 권역별 불가행위 규정 |
| | 간접 규제 |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규제 • 공장건축 총량제 • 대학입학정원 총량제 |
| | 경제적 규제 | • 과밀부담금, 조세지원 배제, 취득세·등록세·재산세의 증세 |

자료 : 국가기록원(<https://www.archives.go.kr>)

2. 규제 내용

- 행위제한, 세제규제(증과세 및 지원배제)
 - 행위제한 : 불가 행위 규정, 총량제한
 - 예)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 정원의 증원 의미), 공업지역의 지정,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할 수 없음

- 공장총량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이상인 공장, 이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재축, 개축은 제외)시 적용

○ 세제규제 : 취득등록세·재산세 증과세, 조세지원 배제, 부담금 부과

- 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본점을 설립하거나 전입하거나 지점 설치, 전입한 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증과 : 등록면허세 일반세율의 3배증과

- 서울시의 경우 과밀부담금 부과 등

□ 수도권 공장 이전·증설 제한

○ 다음의 허용범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제한

표 1-3 | 수도권 공장이전·증설 허용 범위

| 구분 | 산업단지 | 공업지역 | 기타지역 |
|--------|---|---|--|
| 과밀억제권역 | 공장 신·증설 제한 없음 | [대기업] • 기존 공장 3,000㎡ 내에서 증설 • 기존 공장부지 내에서 증설 • 첨단 공장 200% 내에서 증 [중소기업] • 도시형 공장 신설, 증설 및 기존 공장 증설 • 기타지역으로부터의 이전 및 공업지역 상호 간 이전 | [대기업] • 기존공장, 근린공장, 첨단 공장 1천㎡ 이내 증설 • 첨단공장 100% 내 증설 [중소기업] • 근린공장, 첨단공장의 신증설 • 기존공장의 증설 |
| 성장관리권역 | 공장 신·증설 제한 없음 | [대기업] • 과밀억제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부터의 이전 • 첨단공장 증설 • 근린공장 5천㎡ 내 신·증설 [중소기업] • 규모 및 업종 제한 없음 | [대기업] • 기존공장 3천㎡ 내 증설 • 기존공장부지 내 증설 • 첨단공장 200% 내 증설 • 근린공장 5천㎡ 내 신·증설 [중소기업] • 규모 및 업종 제한 없음 |
| 자연보전권역 | [대기업] • 기타지역과 동일 [중소기업] • 면적 제한 없음 | [대기업] • 기타지역과 동일 [중소기업] • 도시형공장 3천㎡ 내 신증설 • 기타지역으로부터의 이전 및 공업지역 상호 간 이전 | [대기업] • 첨단공장, 근린공장 등 1천㎡ 내 신·증설 • 기존공장 1천㎡ 내 증설 [중소기업] • 첨단공장, 근린공장 등 1천㎡ 내 신·증설 • 기존공장(도시형공장) 3천㎡ 내 증설 |

자료 : 이창무(2016), 저출산고령화시대 수도권규제에 대한 재평가와 개선방향, 한국경제연구원 대외세미나 (2016.7.26) 발표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집적활성화법」(2015)

제2장

주요 이슈

제1절 수도권 규제의 실효성

제2절 수도권 권역 내 역차별

제3절 수도권 규제의 악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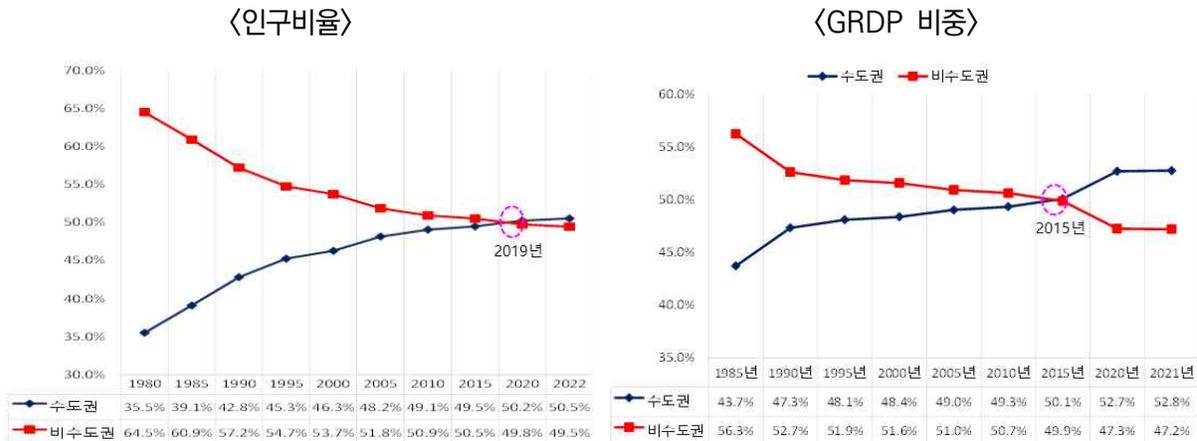
제2장 주요 이슈

제1절 수도권 규제의 실효성

1. 양적 불균형 심화

- 수도권-비수도권 간 불균형 오히려 심화. 규제의 역효과, 규제 실효성 없음
 - 수도권 인구집중 심화
 - 수도권 GRDP(2015)·인구 비중(2019) 비수도권 역전

그림 2-1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비율 및 GRDP 비중



주1 : 과밀억제권역 :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12개 지역 평균
 성장관리권역 : 오산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용인시, 파주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12개 지역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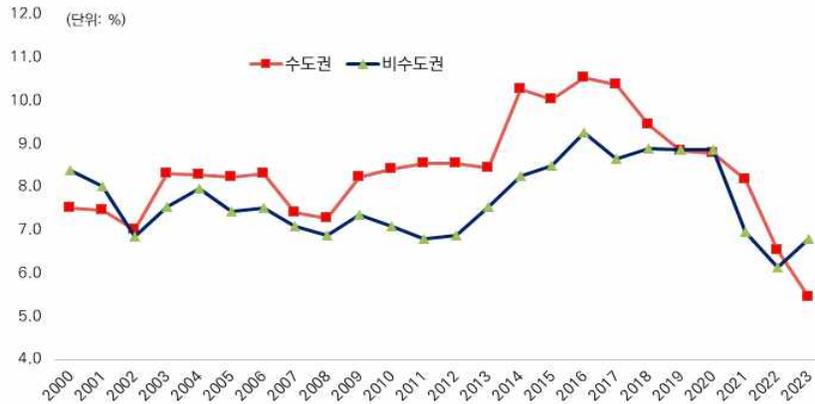
주2 : 시흥시, 남양주시의 경우 일부지역이 두개 권역에 분포하고 있어 제외

자료 : 통계청

2. 수도권 청년 일자리 부족

- 수도권 청년 실업률 > 비수도권 청년 실업률
 - 전반적으로 수도권 청년실업률이 비수도권 대비 높게 형성, 상대적으로 청년 일자리 부족

그림 2-2 | 청년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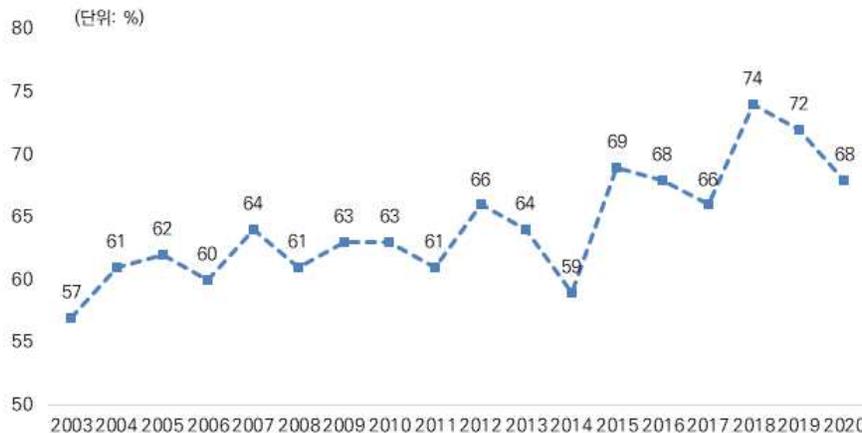
주 : 청년은 15-29세 인구를 기준으로 함
 자료 : 통계청

3.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확대

□ 수도권-비수도권 간 균형발전 불평등 확대

- 국가균형발전 4개 부문 27개 지표 통합 불평등 지수 등락 중이나 전반적으로 증가 추이

그림 2-3 | 수도권-비수도권 간 불평등 지수



주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명시된 균형발전 정의에 기반한 ①지역 간 발전의 기회 균등, ②자립적 발전역량 증진, ③삶의 질 향상, ④지속가능 발전 도모 4개 부문 27개 지표 기반 균형발전 불평등도 기준. 산업연구원 정리
 자료 : KDI 연중기획 인포그래픽(2023년 01월호), “확대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중 발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방소멸시대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방안: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2022. 재구성

제2절 수도권 권역 내 역차별

1. 권역간 격차 심화

- 성장관리권역 인구증가율 과밀억제권역 역전(1999년)
- 성장관리권역 경제활동인구 증가 추이 과밀억제권역 대비 빠른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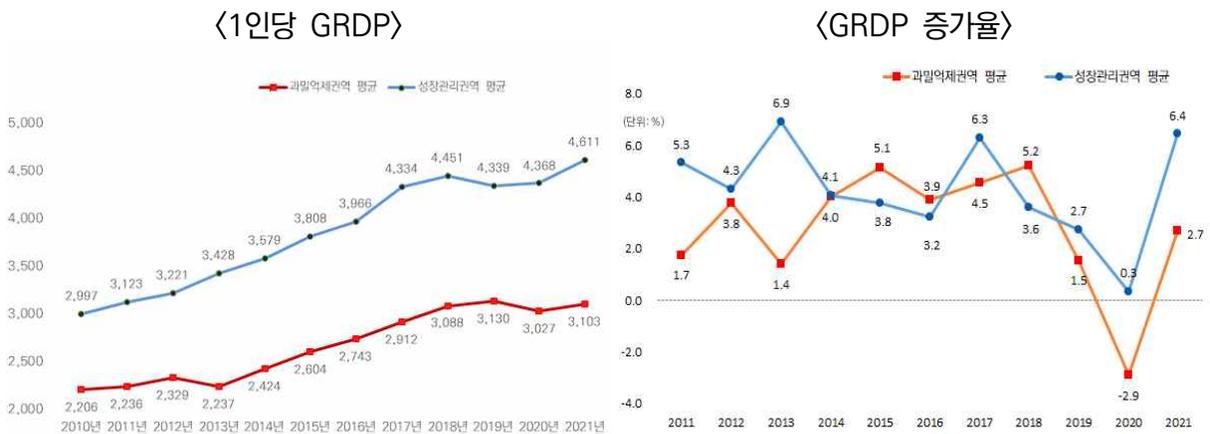
그림 2-4 | 수도권 권역별 인구 증가율 및 경제활동 인구 추이



주1 : 인구증가율 단위 %, 1인당 GRDP 단위 만 원
 주2 : 과밀억제권역 :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12개 지역 평균
 성장관리권역 : 오산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용인시, 파주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12개 지역 평균
 주3 : 시흥시, 남양주시의 경우 일부지역이 두개 권역에 분포하고 있어 제외
 자료 : 통계청

- 과밀억제권역 1인당 GRDP < 성장관리권역 1인당 GRDP(꾸준히 하회), 격차 확대

그림 2-5 | 수도권 권역별 1인당 GRDP 및 GRDP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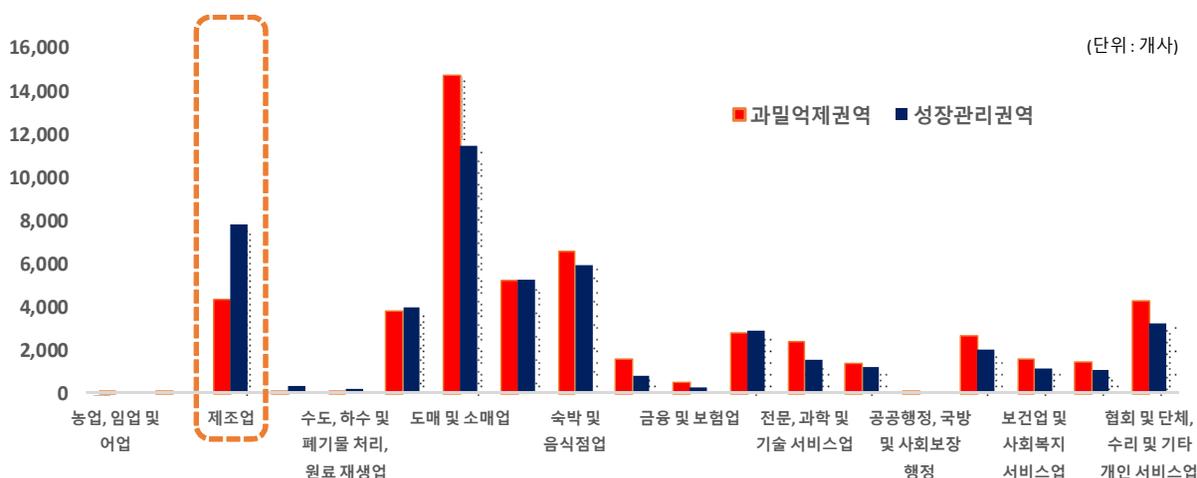


주1 : 인구증가율 단위 %, 1인당 GRDP 단위 만 원
 주2 : 과밀억제권역 :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12개 지역 평균
 성장관리권역 : 오산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용인시, 파주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12개 지역 평균
 주3 : 시흥시, 남양주시의 경우 일부지역이 두개 권역에 분포하고 있어 제외
 자료 : 경기통계

2. 과밀억제권역 산업구조 전환 제약

- 과밀억제권역의 영세산업구조 지속, 취약한 산업구조 전환 어려움, 성장에 제한
 - 과밀억제권역,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심
 - 성장관리권역 제조업 규모 과밀억제권역의 2배
- 과밀억제권역 사업체수 증가 추이 성장관리권역의 1/3 수준
 - 2022년 기준 최근 3년래 성장관리권역 사업체 수 증가율 6.27%, 과밀억제권역 1.92%

그림 2-6 | 수도권 권역별 산업구조



자료 : 경기통계

표 2-1 | 수도권 권역별 사업체 수 현황

| 사업체 수 합계(개) | 2020 | 2021 | 2022 | 2020-2022년 증감율(%) |
|----------------|---------|---------|---------|----------------------|
| 과밀억제권역 합 | 635,617 | 638,814 | 647,835 | 1.92 |
| 성장관리권역 합 | 571,087 | 589,439 | 606,901 | 6.27 |

주1 : 2021년 산업종분류 기준

주2 : 과밀억제권역 :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12개 지역 평균
성장관리권역 : 오산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용인시, 파주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12개 지역 평균

주3 : 시흥시, 남양주시의 경우 일부지역이 두개 권역에 분포하고 있어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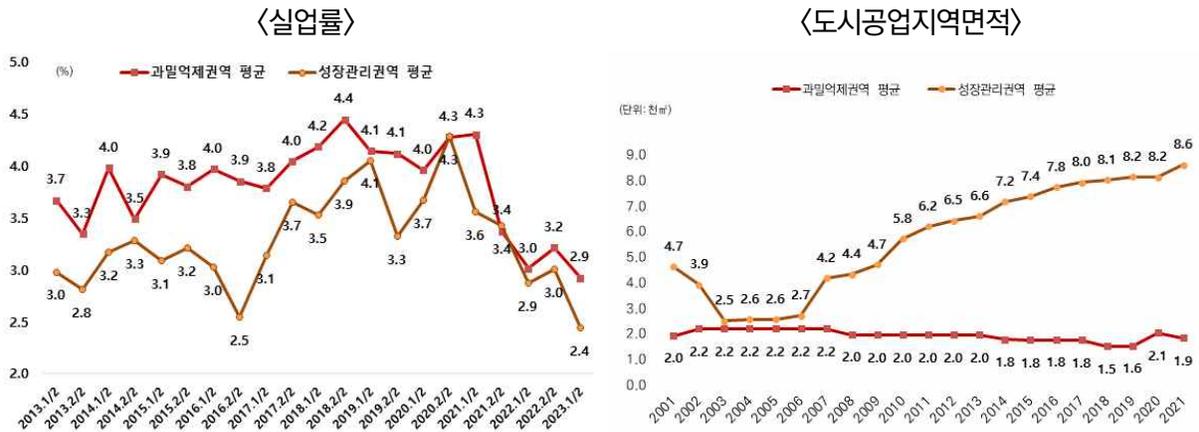
자료 : 경기통계

3. 높은 실업률, 도시공업지역 제약

□ 과밀억제권역 지역의 높은 실업률, 도시공업지역면적의 제한적 확장 등은 산업성장의 제약 요인

- 과밀억제권역 실업률 > 성장관리권역 실업률 상회
- 성장관리권역 도시공업지역면적 지속 증가, 과밀억제권역 면적의 4배 초과

그림 2-7 | 권역별 실업률 및 도시공업지역면적



주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포함지역 상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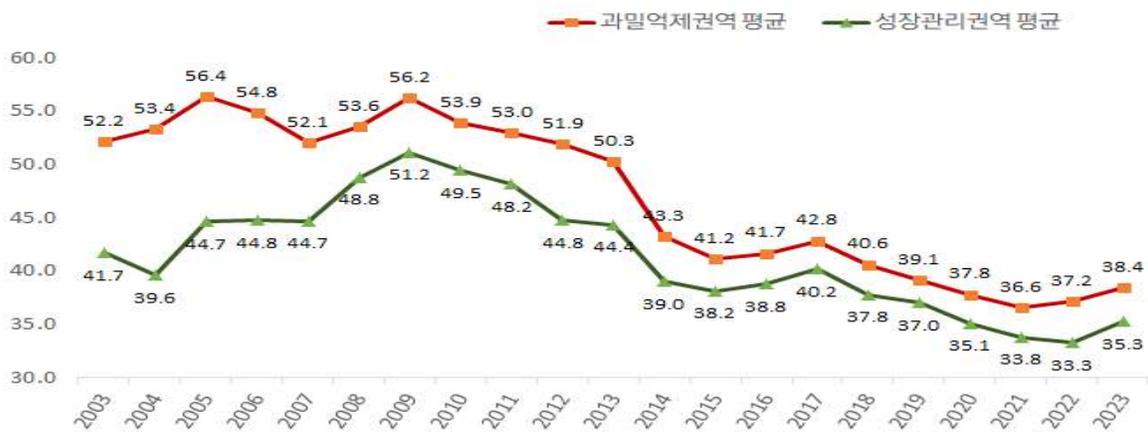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4. 재정악화

□ 권역간 재정자립도 격차 폭 축소

- 과밀억제권역 재정자립도 하락 폭 > 성장관리권역 하락 폭

그림 2-8 | 권역별 재정자립도 추이



주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포함지역 상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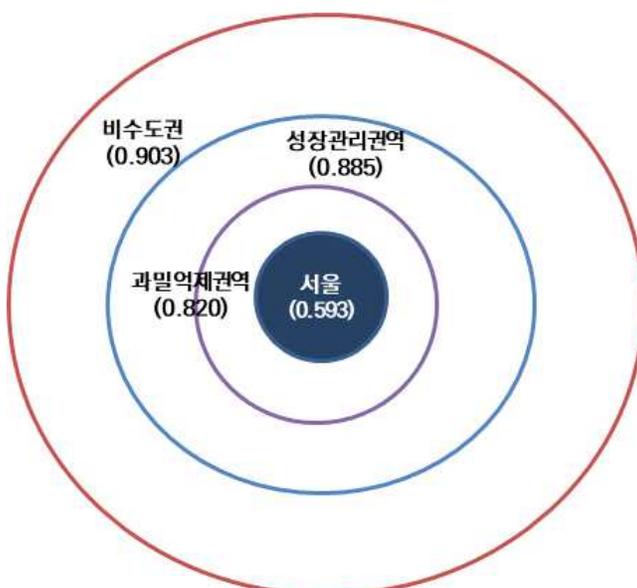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14년부터는 세입과목개편 후 데이터.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제3절 수도권 규제의 악영향

□ 수도권 규제는 출생률에도 악영향

- 청년층이 밀집된 수도권의 높은 실업률, 주거불안정 → 저출생(유의성 확인)
- 합계출생률(2022년) : 비수도권(0.903) > 성장관리권역(0.885) > 과밀억제권역(0.820) > 서울(0.593)

그림 2-9 | 2022년 합계출생률



주1: 과밀억제권역 :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12개 지역 평균
 성장관리권역 : 오산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용인시, 파주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12개 지역 평균
 주2 : 시흥시, 남양주시의 경우 일부지역이 두개 권역에 분포하고 있어 제외
 주3 : 비수도권 : 광역시 제외 비수도권(8개 도 : 강원도, 충청 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평균). 광역시 포함 시 비수도권 평균: 0.883
 주4 : 합계출산율 : 가임 여성 1인당 출산율
 자료 : 통계청(2022년 기준)

표 2-2 | 2022년 합계출생률

| 시도별 | 합계출생률 | 시도별 | 합계출생률 |
|-------|-------|------|-------|
| 전국 | 0.778 | 경기도 | 0.839 |
| 서울특별시 | 0.593 | 강원도 | 0.968 |
| 부산광역시 | 0.723 | 충청북도 | 0.871 |
| 대구광역시 | 0.757 | 충청남도 | 0.909 |
| 인천광역시 | 0.747 | 전라북도 | 0.817 |
| 광주광역시 | 0.844 | 전라남도 | 0.96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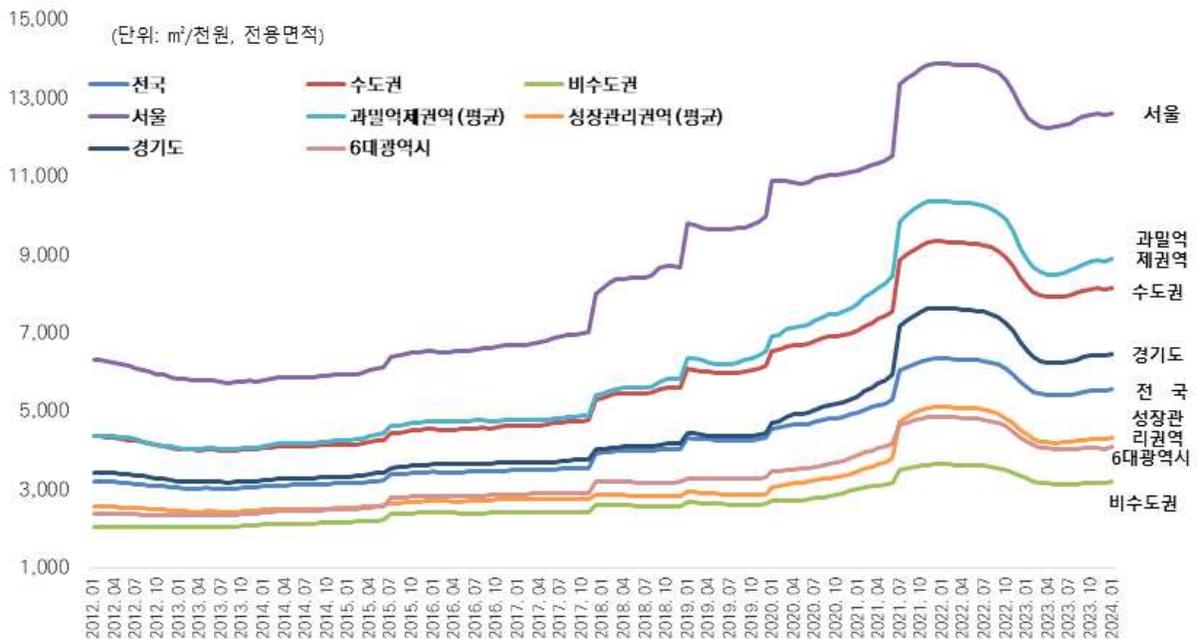
| | | | |
|---------|-------|---------|-------|
| 대전광역시 | 0.842 | 경상북도 | 0.93 |
| 울산광역시 | 0.848 | 경상남도 | 0.838 |
| 세종특별자치시 | 1.121 | 제주특별자치도 | 0.919 |

자료 : 통계청

□ 주거 불안정

- 평균단위 아파트 매매가격 : 서울 >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 성장관리권역 > 비수도권
- 아파트가격, 합계출생률과 역의 방향성 확인

그림 2-10 | 아파트 매매가격(평균단위)



주 : 평균단위 매매가격 기준

자료 : 한국 부동산원

□ 실증분석

- 아파트가격, 합계출생률에 유의한 수준으로 부정적 영향
- 실업률, 합계출생률 변화와 음의 방향성 보이나 유의성 없음
- 출생률 변화에 아파트가격 변화 비중 > 실업률 변화 비중(분산분해 결과)
- (참고)아파트가격, 실업률 낮을수록 상승(유의한 수준)

표 2-3 | 실업률, 아파트가격, 출생률 간 장기 상관관계 (SVAR)

| Type of shocks | | Coefficient | Std. Error | z-Statistic | Prob. |
|-------------------------|----------|-------------|------------|-------------|--------|
| 실업률 (Dunempl) | To 실업률 | 0.474962 | 0.05937 | 7.999999 | 0.0000 |
| | To 아파트가격 | -0.0873 | 0.022413 | -3.89529 | 0.0001 |
| | To 출생률 | -0.01665 | 0.013853 | -1.2022 | 0.2293 |
| 아파트가격 (Dlnprice_apt) | To 아파트가격 | 0.11074 | 0.013843 | 7.999999 | 0.0000 |
| | To 출생률 | -0.0488 | 0.012262 | -3.97989 | 0.0001 |
| 출생률 (Drate_Birth) | To 출생률 | 0.060172 | 0.007522 | 7.999999 | 0.0000 |

주1 : 실업률, 출생률 차분, 아파트가격 로그차분, 증가율 및 증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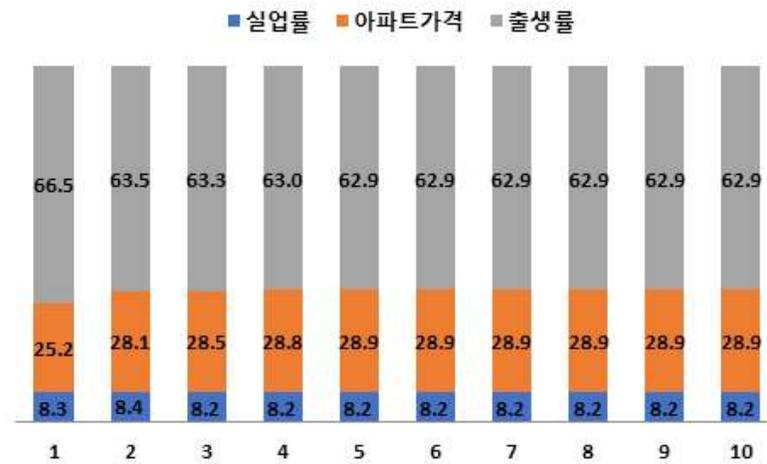
주2 : 시차검정 결과 반영 1차 차분

주3 : 레벨변수의 단위근, 공적분 확인 → 차분 및 로그차분으로 안정화

주4 : SVAR, 장기제약부여(0제약) 장기적 상관성 확인

주5 : 2012 ~ 2023년 연간데이터 일부 2012년 2023년 missing, 실업률 각 연도 하반기 수치 반영

그림 2-11 | 출생률 분산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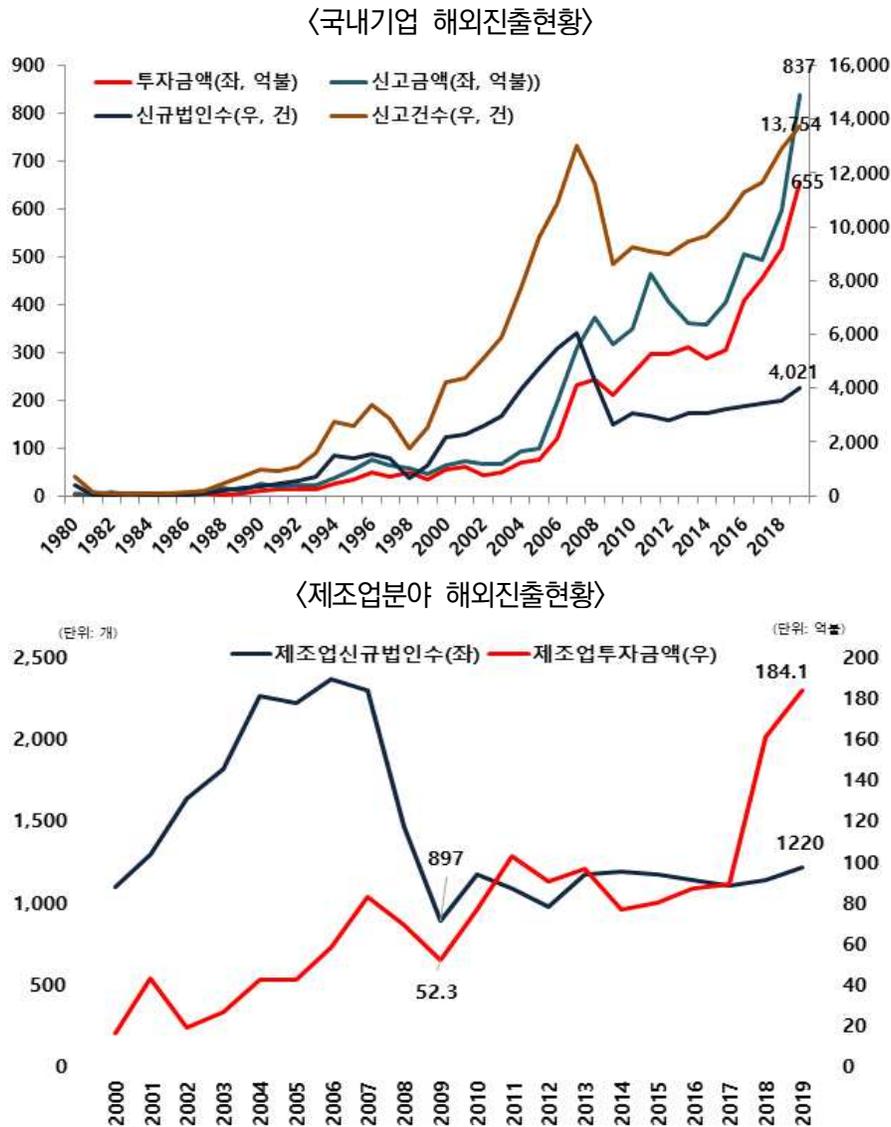


□ 기업의 해외 이전 확대 : 수도권 규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국내기업이 규제를 피해 해외로 나가는 원인 중 하나

- 2019년 국내기업 해외이전 4,021건, 신고 13,754건, 2017년 이후 3년 누적 이전기업 1만개 이상

- 제조업분야 전체 이전기업의 1/3 차지. 금융위기 이후 하락하였으나 증가 추이 지속

그림 2-12 | 국내기업 및 제조업 해외진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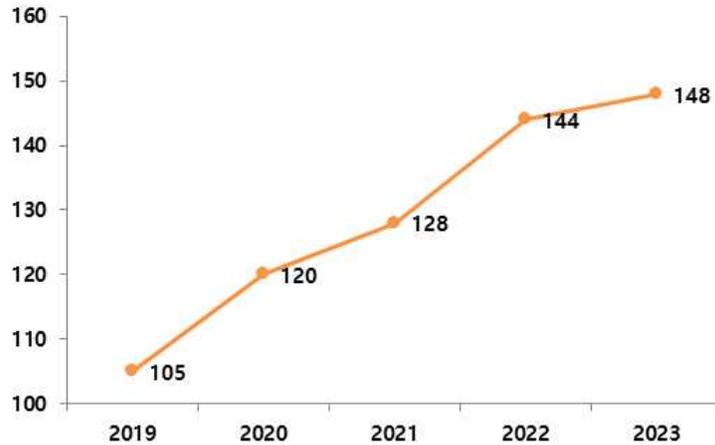
주 : 2020년 이후 자료 코로나 영향 반영되어 있어 제외
 자료 : 한국 수출입은행

□ 2023년 해외창업 스타트업 148건. 2020년 대비 20% 증가

○ 새싹기업 4곳 중 1곳, 규제로 해외 이전 고려

- 창업기업 256개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25.4% '국내 규제로 해외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자료 : 무역협회)

그림 2-13 | 해외에 본사를 둔 한국 스타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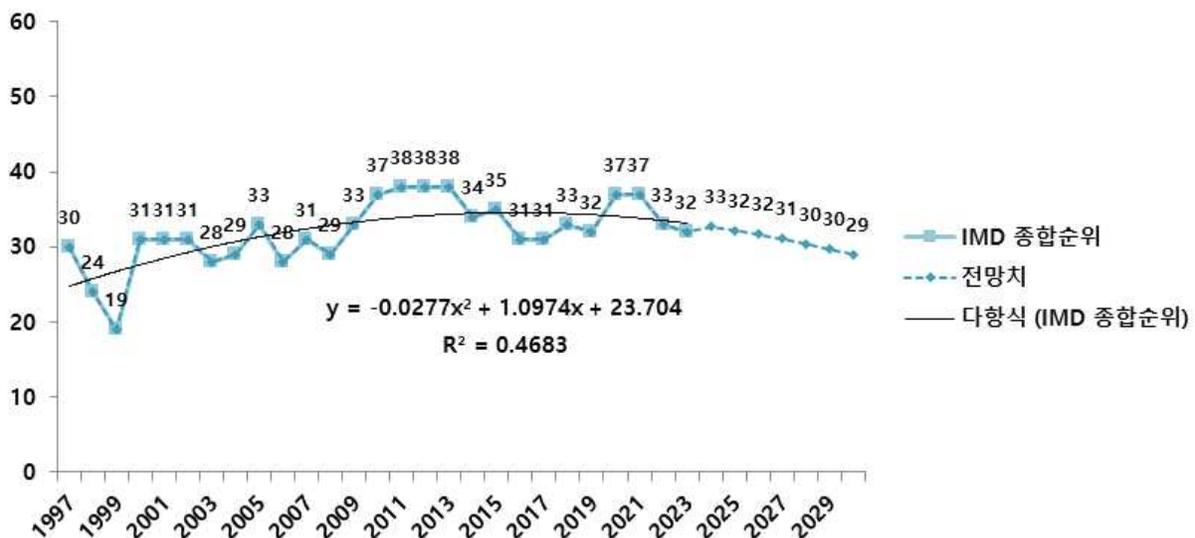
자료 : 벤처투자정보업체 '더브이씨', 서울경제(2024.04.21.) '규제피해...스타트업 본사, 해외로 간다' 기사 재정리

□ IMD 국가 경쟁력 지수 약화

○ IMD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 : 다항추세 반영 하락 추이 지속 전망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매년 60개 국가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
- 경제성과, 정부효율, 기업효율, 인프라 4개 분야, 20개 부문, 338개 세부항목 평가 종합순위. 다항추세 기준 하락세
- 2030년까지 다항추세 연장 시 하락 추이 지속 전망

그림 2-14 | IMD 국가경쟁력 종합순위 추이



주 : 방향성 확인 위해 60개국 기준 역순배열(60-해당연도 순위). 수치 높을수록 경쟁력 상승 의미. 60 최고. 예) 2023년 종합순위 28위 → 32위

자료 : IMD「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WEF「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재구성

제3장

해외사례 분석

제1절 일본

제2절 프랑스

제3절 영국

제4절 해외사례 종합 및 시사점

제3장 해외 사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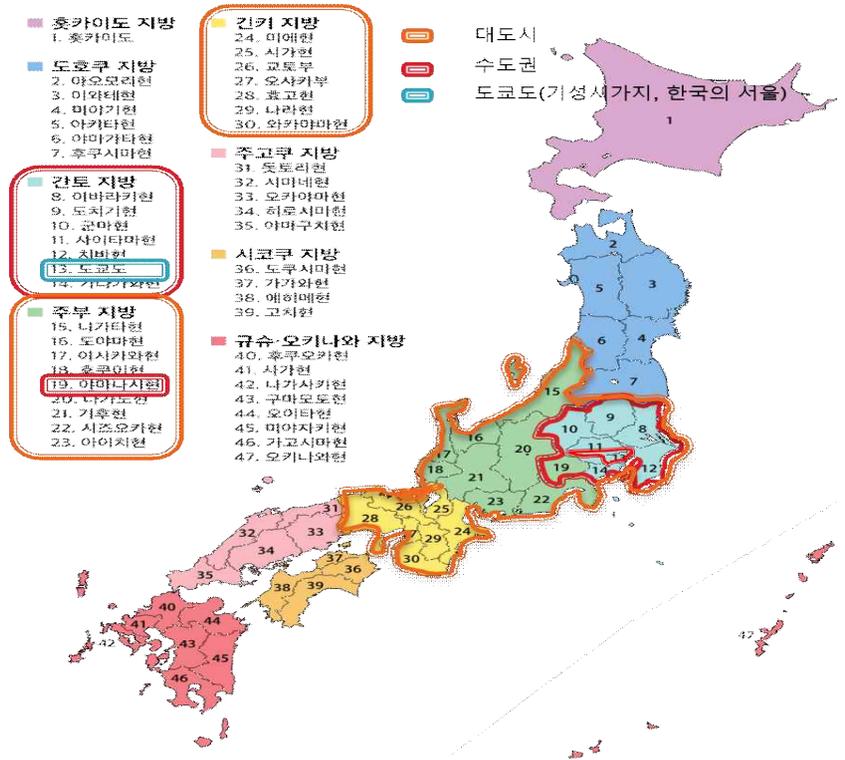
제1절 일본

1. 일본의 수도권 정비계획 개요

□ 일본 대도시와 수도권

- 일본은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대도시권 정비계획(3권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가 수도권 정비계획
 - 일본 대도시는 간토지방 중심의 수도권과 긴키권, 주부권 3개 지역으로 구성
- 도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의 인구 집중·과밀문제를 배경으로 중심부예의 과도한 인구·산업 특히 공장의 집중을 억제하는 것과 동시에 무질서한 시가화의 억제나 권역 내에서의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대도시권 정비법 제정, 정책 구역 제도나 3권 계획 및 그와 관련한 제도 창설
 - 동일한 틀의 정비계획을 대도시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수도권이 하나의 축
 - 3권 계획 : 수도권정비법(1956년), 긴키권정비법(1963년), 중부권정비법(1966년)에 따른 정비 계획
 - 정책구역제도 : 대도시 지역을 기성시가지, 근교정비지대, 도시개발구역, 근교녹지보전 구역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제도
- 수도권은 간토지방 6개 현과 도쿄도, 주부지방의 야마나시현 등 1도 7현 8개 지역이 해당
 - 도쿄도, 이바라키현, 도티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가나가와현, 야마나시현
 - 수도권에는 일본 정부 기관, 대기업 본사, 금융 기관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높은 인구 밀도와 전체 인구의 30% 가량 거주

그림 3-1 | 일본의 대도시와 수도권



□ 일본 수도권정비계획 제정 및 시행

- 1950년대 이후 도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의 인구 과밀화 문제 및 산업시설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정비 계획 제정
 - 수도권정비법('56년), 수도권공장등제한법('59년)을 통해 기성 시가지에 산업 및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내 산업 및 인구의 적절한 배치를 도모
 - 1972년 공장등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500m² 이상의 모든 공장에 대해 개설 허가를 의무화함으로써 과밀 공업 지역(이전 촉진 지역)에서 공업 집중도가 낮은 지역으로의 신설 및 증설을 촉진

□ 일본 수도권 정책구역

- 수도권의 일부지역을 기성시가지, 근교정비지대, 도시개발구역, 근교녹지보전구역으로 지정
- 면적 : 총 12,851km², 전국면적의 3.4%
- 기성시가지
 - 도쿄시 인접지역, 산업 및 인구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시가지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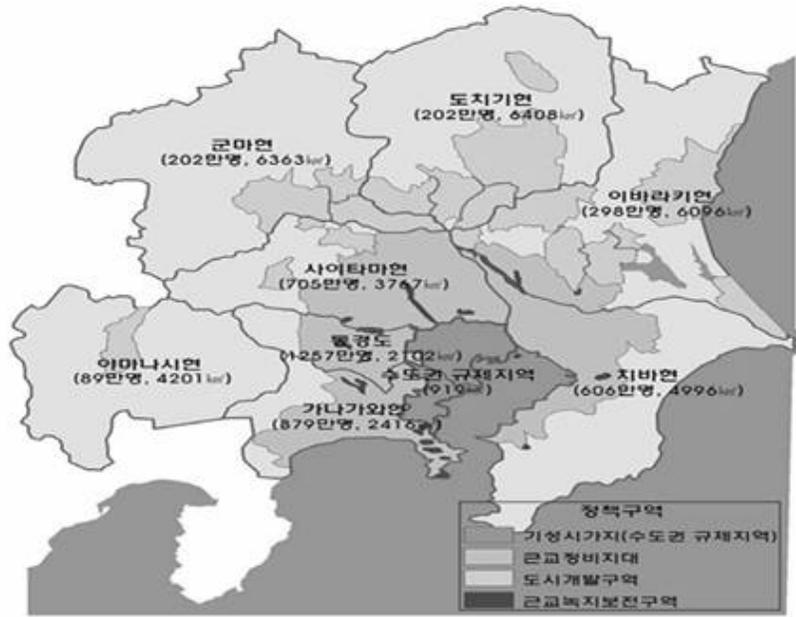
- 도쿄도 특별구, 미타카시, 무사시노시, 가나가와현의 요코하마시, 가와사키시, 사이타마현의 가와구치시
- 면적 : 959km²
- 근교정비지대
 - 기성시가지 등의 근교에서 무질서한 시가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인 정비 및 녹지 보전의 필요가 있는 구역
 - 도쿄도 하치오우지시, 사이타마현의 가와고에시, 치바현 치바시 등 162개 시정촌
 - 면적 : 6,374km²
- 도시개발구역
 - 기성시가지에의 산업 및 인구의 집중을 완화해 지역 내 산업 및 인구의 적정한 배치를 도모. 공업도시, 주택도시, 그 외의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적당한 구역
 -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 이바라키현 츠타우라시 등 94개 시정촌
 - 면적 : 5,518km²
- 근교녹지보전구역
 - 대도시부의 주변, 지역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무질서한 시가지화를 방지하고 광역적인 차원에서 녹지를 보전하는 구역
 -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도쿄도 아치오우지시, 히가시무라야마시 등 41개 시정촌
 - 면적 : 157km²

표 3-1 | 일본 수도권 정책구역

| 권역 | 면적(km ²) | 해당 지역 | 비고 |
|----------|----------------------|--|-----------------------|
| 기성시가지 | 959 | 도쿄도(특별구, 미타카시, 무사시노시), 가나가와현(요코하마시, 가와사키시), 사이타마현(가와구치시) | 공장, 학교 입지 제한 |
| 근교정비지대 | 6,374 | 도쿄도 (하치오우지시), 사이타마현(가와고에시), 치바현(치바시) 등 162개 시정촌 | 계획적 시가지 정비, 녹지보전 |
| 도시개발구역 | 5,518 | 사이타마현(구마가야시), 이바라키현(츠타우라시) 등 94개 시정촌 | 공업도시 등으로 발전 |
| 근교녹지보전구역 | 154 | 가나가와현(요코스카시), 도쿄도(하치오우지시, 히가시무라야마시) 등 41개 시정촌 | 근교정비지역 내 녹지보전효과 높은 지역 |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2006), 전국경제인연합회(2015), 최근 일본의 수도권 발전정책 동향과 시사점 발췌

그림 3-2 | 일본 수도권 정책구역 구분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2006), 전국경제인연합회(2015), 최근 일본의 수도권 발전정책 동향과 시사점 발취

□ 일본 수도권정비계획의 특징

- 중앙 계획과의 일치성 : 국토형성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을 포함한 3권 계획은 국토형성계획(전국계획, 광역지방계획)과 조화가 유지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림 3-3 | 일본 국토계획의 체계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 현지 방문 배포 자료

2. 일본의 수도권 정비 제도 변화

□ 일본 수도권 정비계획 변화 과정

- 1950년 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인구·산업의 집중 현상과 이로 인한 지역불균형 문제로 수도권정비법, 수도권공장등제한법을 제정하였으나, 인구감소, 산업시설 기반 확대에서 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 일자리 부족 등의 이유로 관련법 폐지 필요성 대두
- 2002년 이후 일본은 기성시가지의 공업 및 대학 등 신설 및 증대 제한에 관한 공업등제한법 폐지
 - 제5차 수도권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환경 친화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 수도권 정책이 '규제'에서 '수도권 기능의 강화와 재편'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 이를 위해 2002년 3월 '수도권기성시가지의공업등제한법'을 폐지하고 2006년 4월에는 '공업재배치촉진법'을 폐지
 - 2007년 재정상 특별조치 역시 종료됨에 따라 정비계획에 근거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상 특별지원 제외
- 현재 일본 정부는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정책'을 목표로 공공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해 「마찌즈쿠리 3법(まちづくり3法)」(「도시계획법」, 「중심시가지활성화법」, 「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을 1998년부터 2000년에 걸쳐 제정·개정함
 - 구체적으로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면적 정비사업이나 도시기반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과의 네트워크 강화, 상업 기능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03년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을 제정하면서 일본은 49개의 도도부현을 9 ~ 12개의 도주로 개편하고, 3,323개 시정촌을 1,803개로 통폐합하는 등 자치단체의 광역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개
- 2006년 8월에는 「중심시가지활성화법」을 개정하여 내각총리대신(大臣)이 시정촌(市町村)¹⁾이 작성한 중심시가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이하, '인정기본계획')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원조치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를 목표로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를 설립

1) 우리나라 시·읍·면에 해당하는 일본의 행정 구역

- 인정기본계획에 기반한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특례, 보조금, 세제 혜택, 용자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짐

표 3-2 | 일본 수도권 정비계획 변화

| 년도 | 정책내용 |
|--------|---|
| 1983 | • 허가조건 완화(허가기준 추가), 중소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한 신·증축 허가 추가 |
| 1988 | • 「다극분산형 국토조성 촉진법」, 행정기관 지방이전 착수 및 수도권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재평가 |
| 1998 | • 규제업종 축소·완화 및 허가조건 완화 |
| 1999 | • 규제대상지역 축소, 규제대상(대학원 제외) 및 기준 면적 완화 |
| 2002.7 | • 「수도권 기성시가지의 공장 등 제한법」, 「강기권 ²⁾ 기성시가지의 공장 등 제한법」 폐지 |
| 2003 | •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제정, 자치단체 광역화 : 49개 시도부현을 9 ~ 12개 도주로 개편, 3,323개 시정촌을 1,803개로 통폐합하는 등 광역화 |
| 2006.4 | • 「공업재배치 촉진법」 폐지 |
| 2006.8 | • 「중심시가지활성화법」 개정 • 시정촌(市町村 : 우리나라 시·읍·면)이 작성한 중심시가지 활성화 기본계획 인정(인정기본계획) 제도 신설, 법률상의 특례, 보조금, 세제, 용자 등을 통해 중점적으로 지원 |

자료 : 이창호(2013), 「수도권규제 관련 해외 정책 동향과 향후 과제」 및 추가 정리

□ 수도권 규제 폐지 :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특구전략 추진

- 제5차 수도권 기본계획(1999 ~ 2015년) : 수도권 정책의 중심이 ‘규제’에서 ‘수도권 기능 강화와 재편’으로 이동
- 장기불황 해소, 글로벌 경쟁력 위해 수도권규제 폐지 등 전면적인 규제완화, 투자·경제 활성화 추진
- 규제개혁을 위한 특별 대책으로 「국가전략특구법」(2013.12.) 제정을 통해 국가전략특구 지정하고, 수도권에도 특구 지정(도쿄도, 가나가와현, 니가타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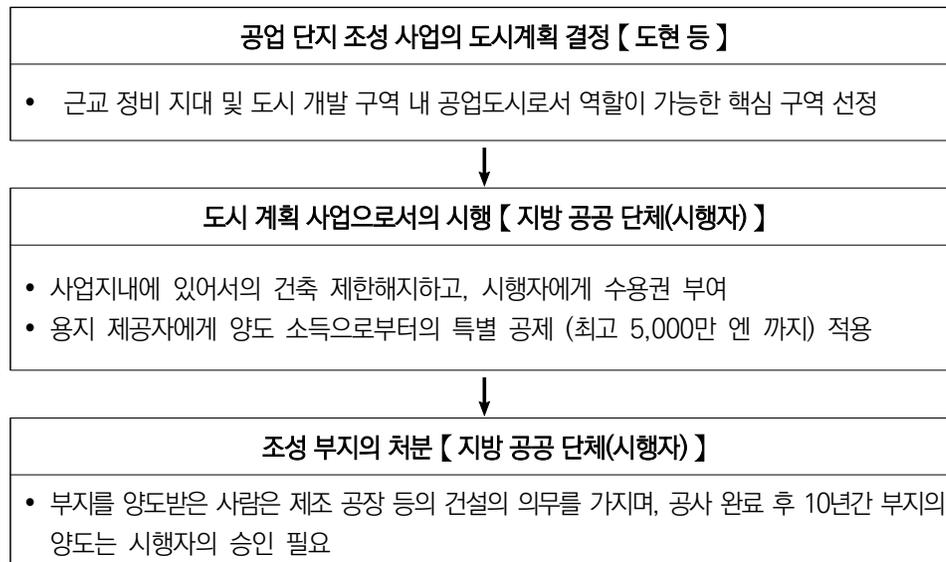
□ 2023년에는 수도권 금융특별제도, 소득세·법인세 특례조치 폐지

- 도부현에 대한 특별조치, 정비계획 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일정 보조사업 부담액에 대해 수도권 지방채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폐지
 - 개인 또는 사업자가 기성시가지 등 관내에 있는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신 특정지역 내 자산을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 수익의 80% 과세를 이연할 수 있음

2) 강기권 : 교부현(京都府), 오사카부(大阪府), 효고현(兵庫県), 시가현(滋賀県), 나라현(奈良県), 와카야마현(和歌山県), 미에현(三重県)의 2부 5현

-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더불어 중심 시가지 활성화 및 도시 재생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통해 지방의 중소도시를 체계적으로 지원
 - 수도권 규제개혁과 규제 완화 특별대책으로 구조개혁특구, 종합특구, 국가전략특구 등 특구 전략 추진 : 경제회복과 청년실업문제 해결, 개혁 이후 생산, 일자리, 인구 증가
- 규제는 완화하되 공업단지 조성사업 등 메리트는 유지, 비수도권 반발 무마
 - 일본 공업단지 조성사업
 - 도시 개발 구역을 공업 도시로 발전시키고 근교 정비 지대 등을 공업 시가지로 정비하기 위해 지방의 제조 공장의 부지 및 도로 등 공공시설의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

그림 3-4 | 일본 공업단지 조성사업 구조



3. 일본 수도권 규제완화 및 폐지 배경

- 일본 제조품 출하액, 제조업체 및 종사자 수의 변화
 - 공장제한법 제정 당시에 비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되었으며, 수도권 전체 제조업의 종사자수와 출하액이 감소함과 동시에 도쿄권역에서 교외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
 - 공장등제한법 폐지 이후에도 같은 추세
 - 제조업 종업원 수도 1960년을 기점으로 3대 도시권 비율이 축소되고, 지방권의 비율이 증가
 - 특히 3대 도시권 중 도쿄, 오사카의 비율이 축소되고, 나고야는 상대적으로 비율 상승

□ 일본 수도권 지역별 학생 수 변화

- 일본 학생 수는 1960년 71만 명에서 2016년 기준 269만 명으로 증가한 반면 기성시가지 비율 감소
 - 1960년 ~ 2002년 23구(기성시가지)의 비율이 감소하고(44% → 15%) 기타지역의 비율 상대적으로 증가
 - 2002년 제한법 폐지 이후 도쿄권의 학생 수는 유사한 수준 유지

□ 일본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재검토를 위한 각계의 요구 반영

- (오사카부) 대도시 산업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및 예산에 관한 제한·요망(2003년 6월)
- (종합 규제개혁 회의) 신규 산업과 혁신관점에서 공장등제한법 제도 재검토(2005년 7월)
- (도쿄도) “공장 등 제한 구역 내의 공장 및 대학 등의 신·증설을 제한하고, 도쿄도 구부 등에 산업 및 인구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공장등제한법」 은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다하였으며 새로운 도쿄의 산업 활력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폐지 주장(2005년 9월)
- (간사이 경제 연합회) 도심에서의 대학 입지를 촉진하기 위해, 공장등제한법을 완화함과 동시에, 자체 대학 입지 인정 필요성을 종합 규제 개혁 회의에 제출(2005년 9월)
- (오사카부·교토부·효고현·오사카시·교토시·고베시) 공장 등 제한법에 대해 폐지 요망서 제출(2005년 10월)
- (경제 단체 연합회) 신산업·신사업 창출 등의 관점에서 공장등제한법의 폐지를 포함한 추가 검토 필요성을 종합 규제 개혁회의에 제출(2005년 10월)
- (경제 재정 자문회의) 대학 신·증설과 교육 개혁을 위한 공장등제한법 제도 재검토 요구(2007년 9월)

4. 일본 수도권 규제완화 및 폐지에 대한 평가

- 일본의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30년 전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폐지를 통한 장점을 공감하고 현재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발전 전략에 따라 효율적 도시 조성 및 배치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 일본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통해 도시 인프라의 집중과 억제 목적은 낮아졌으며 연구소, 문화시설, 경기장 등 인프라를 분산하여 중심지 이외 주변 도시의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 노력

- 수도권 정비계획법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규제를 축소 혹은 폐지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있고, 경제·산업분야 연합회 등에서 해당 규제의 불필요성 제시에 따라 규제개혁회의를 통해 재검토 요구되면서 폐지
 - 규제완화에 대한 필요성(인구감소, 토지단가 상승, 일자리 부족)과 불필요한 규제 제도라는 인식에 따라 자연스러운 폐지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핵심은 규제가 아닌 지원정책을 통해 수도권 활성화, 지방과의 균형발전 추구
 - 최근에는 지원에 대한 부분도 점차 폐지(축소)하고 있으며 공업단지조성사업 등 기성시가지 외부의 메리트 제공 유지로 공장3법 완화에 대한 불만 따로 없음
 - 도시계획법, 건축기준법, 교육법을 통해 필수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보완

제2절 프랑스

□ 수도권 규제 정책 변화

- 규제 도입 배경 : 전통적 중앙집권체제로 인해 주요 생활 기반이 파리에 집중되어 있음
 - 파리광역권의 확대 억제와 과도한 도시 기능의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1955년 공장설립허가제(아그레망, Agrément), 1960년 과밀부담금제(르드방스, Redevance)와 같은 입지규제 수단 도입 및 시행
- 규제 완화 과정
 -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필요성 저하 및 주변 국가와의 경쟁 환경 변화
 - 과밀부담금제 규제 완화 : 규제 대상에서 공장 제외(1982년)
 - 공장설립허가제 기준 완화 : 파리 중심 제외하고 폐지(1985년)

표 3-3 | 프랑스 수도권 규제 정책 변화

| 구분 | 정책내용 |
|-------------------------|--|
| 규제 도입기 (1950년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설립허가제 시행(1955년) : 일드 프랑스(Il-de France³)를 규제 대상으로 하며 공장 설립 시 중앙정부의 허가를 의무화한 제도로 공업 지역의 지방 분산을 목적으로 함 |
| 규제 강화기 (1960년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드 프랑스를 중심으로 '과밀부담금제' 시행 : 과밀지역에 입지하는 건축물에 대해 부담금 부과 • 파리와 그 주변의 신규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신·증축되는 건축물에 대해 과밀의 정도에 따라 단위 면적당 일정 금액을 부과함(1회 한정) |
| 규제 과도기 (1970년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드 프랑스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여 지방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균형 발전 정책 필요성이 저하됨 • 파리 및 중심지역 개발 제한은 파리 전체의 경제침체로 이어져 결국 유럽 내 국가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위기의식 확산 |
| 규제 완화기 (1980년대 ~ 현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2년) 과밀부담금제 규제 대상 완화 : 규제 대상에서 공장을 제외하여 사무실만 대상 • (1985년) 공장설립허가제 기준 완화 : 일드 프랑스만 제외하고 폐지. 라데팡스(파리의 부도심) 등 주변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여 상업시설 및 사무 공간 등을 확충 • (2004년) 수도권전략 대전환 발표 : 파리권⁴ 위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럽 대도시지역 네트워크 내에서 수도권 전략 전환. 국토정책투자조정기관(DATAR)의 정책목표에서 수도권 규제를 배제시킴 |

자료 : 이창호(2013), 「수도권규제 관련 해외 정책 동향과 향후 과제」 재정리

3) 파리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의 요충지로 연구와 혁신의 핵심지역 및 주요 비즈니스 지역 역할을 수행(자료 : 프랑스 관광 홈페이지(Choose Paris Region))

4) 파리를 비롯한 주변 7개 도로 구성된 중심 도심지(자료 : 이창호(2013))

□ 최근 정책 동향

- 프랑스는 전면재개발 중심의 도시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이를 현대화. 2000년 12월 기준 도시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경제 및 사회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도시 개발 방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도시연대 및 재생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 이하, 「SRU법」)을 제정. 해당 법률을 기반으로 ‘도시재생정책’을 수행하고 있음⁵⁾
- SRU법은 도시와 국토 전반에 걸쳐 연대를 통해 일관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도시재생을 촉진하여 기존의 도시 개발 방식으로 인한 도시 확산의 가속화를 방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⁶⁾

표 3-4 | 도시연대 및 재생에 관한 법률(SRU)

| 구분 | 기존 | 현재 |
|----------------------------|---|---|
| SCOT (국토일관성계획) *광역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RU법 제정 이후, 기존 도시의 기본 발전 방향을 제시하던 SD(schéma directeur)에서 전략적 방침 계획인 SCOT(schéma de cohérence territorial)으로 개편 • 토지 이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시가지의 전략적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보다 유연한 접근 방식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OT는 특정 지역의 주거, 상업, 산업, 교통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주택, 경제 성장, 환경, 공공 서비스 및 기반 시설 등을 포함 • 공공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 정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방향성 결정 |
| PLU (도시지역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계획은 주택, 경제,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기본계획과 별도로 수립 • 도시 성장 억제와 토지 이용을 중심으로 하며, 도시 기반 시설 공급 체계를 포함하여 주로 토지 이용 분야에 집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RU법」의 제정을 통해 도시 관리 방식은 POS → PLU(Plan local d'urbanisme)로 전환되며 도시계획의 규범적 요소와 실용적 요소 간의 경직성을 완화 • 기존의 POS와 비교할 때, 경제, 환경, 주택의 사회적 균형, 토지 및 서비스 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진단이 포함 |
| ZAC (협의정비지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ZAC(Zone d'aménagement concerté)는 '협의정비지구'로 프랑스의 도시 재개발 및 개발 시스템에서 중요한 형태로, 1967년에 제정된 「토지이용기본법률」(Loi d'orientation foncière, LOF법)로서 의해 공식적으로 도입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행 기관, 개인 소유자 |

5) 「SRU법」은 연대의 필요성, 지속가능한 발달, 민주주의 및 지방분권의 강화라는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법은 제1장 도시와 국토정책의 일관성 강화(Renforcer la cohérence des politiques urbaines et territoriales), 제2장 도시정책의 강화(Conforter la politique de la ville), 제3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동정책의 실현(Mettre en oeuvre une politique de déplacements au service du développement durable), 제4장 다양하고 질 높은 주택공급(Assurer une offre d'habitat diversifiée et de qualité), 제5장 규정 및 폐기(Dispositions diverses et abrogations)의 전체 5장(titre)으로 구성됨

6) 자료 : 최민아(2011)

| | | |
|--|---|--|
| | <p>프랑스의 주요 도시들은 1959년에 제정된 ZUP에 따라 우선적으로 도시화 지역을 설정하고 주거 단지를 조성</p> | <p>간의 원활한 협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상수원 관련 시설, 정화 시설, 도로, 학교, 주거 등 다양한 공공시설의 건설을 규정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에는 개발을 위한 예외적인 수단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도시 전반과의 조화를 이루며 경제적 및 행정적 측면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으로 발전함 |
|--|---|--|

자료 : 이창호(2013), 「수도권규제 관련 해외 정책 동향과 향후 과제」 재정리

- 파리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SDRIF 2030 수립
 - SDRIF 2015는 파리 수도권의 지위와 매력도 유지에 기여하였으나 EU 주변 대도시권 등과의 경쟁을 위한 세계 대도시권으로의 발전전략 한계
 - SDRIF 2030에서 경제적 매력도 증대 등 세계대도시권과의 경쟁을 위한 전략을 추가 수립
- 프랑스 수도권 SDRIF(2030)(Schéma directeur de la région Ile-de-France)
 - 프랑스 수도권인 일드프랑스 레지옹에만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 일종
 - 기존 SDRIF(1994~2015)의 후속계획으로 수도권 발전비전과 개발방향을 담음
 - 프랑스의 1960~70년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구가 급증하고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며 도시화가 폭발적으로 진행되던 시기로, 1965년에 제정된 SDAURP(파리지역 도시계획 및 개발 지침계획도)와 1975년에 발표된 SDAURIF(일드프랑스 대도시권 마스터플랜)⁷⁾는 수도권 도시 지역의 확장과 무질서한 도시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⁸⁾
 - 이후에 개정된 SDRIF(1994~2015)는 수도권 지역의 역동성을 증진시키기 보다는 성장 관리에 집중
 - 계획기조 : 유럽 중심지로서의 발전, 파리광역권 차원의 광역교통망 확충, 일드프랑스 레지옹의 성장관리, 기타 목표 설정
- SDRIF(2030) 구성 및 주요 내용
 - 일드프랑스는 프랑스의 총 22개 레지옹 중 하나이며 파리와 파리를 둘러싼 7개의 데파르트망과 1,281개의 코뮌으로 구성
 - 계획적용을 위한 공간 정책 방안으로 레지옹 전역에 대한 토지용도 및 개발 방향을 설정
 - 정책 구역을 도시화된 지역, 도시화가 예정된 지역, 위계별 지역 중심 거점 및 자연 지역을 구분하여 각 구역에 대한 개발 방향 수립

7) 1994년의 개정부터 명칭이 SDAURIF에서 SDRIF로 바뀜

8) 두 계획은 SDRIF의 연장선상에 있는 계획

- 보존이 필요한 농지, 임지, 자연지 등을 구분하고, 기존 도시 지역의 고밀화 또는 도시화 계획을 통해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할 지역을 선정하며, 기반 시설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함
 - 특히 새롭게 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지역인 우선도시화지역 및 조건부도시화지역에는 하위 지자체가 각자 수립한 도시계획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총괄지도⁹⁾에는 해당 지역의 대략적인 위치만 표시되며, 전체 면적에는 유연한 변동 가능성을 부여함
- SDRIF의 내용에서 중·장기 발전 전망에 관한 부분은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며, 인프라와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정에서 도시계획부분은 규제적 성격을 지님. 여기에서 SDRIF와 하위 계획들 간의 양립성(compatibilité)과 보완성(subsidiarité) 원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수립권한의 지방이양 및 상하계획 간 연계 강화
- 1995년 수도권계획 수립주체가 국가단위에서 일드프랑스 레지옹으로 이양됨에 따라 레지옹 단위에서 SDRIF 2030 수립 추진
 - 도시계획권한이 코뮌에 있어 상위계획에서 결정한 계획의 협의를 위하여 50회 이상의 워크샵, 180회 양케이트 조사, 1,300코뮌과 협의 진행 추진
 - 과거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민간, 공공에 대한 건설허가, 레지옹 공공서비스에 대한 건설 및 이용허가 아그레망 발급권한을 지방 이양하고 일부 제한적 아그레망을 제외하고 폐지
 - 20년 전 기준으로 허드방스 구역을 차등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국가, 레지옹, 민간 간 역할분담, 일드프랑스지역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개선논의 진행

9) 1 : 300,000 축적의 총괄지도

제3절 영국

□ 수도권 규제 정책 변화

- 규제 도입 배경 : 런던의 인구와 제조업 집중을 원인으로 발생한 도시 문제를 완화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 지역 개발의 필요성이 커짐 → 1945년 「공장개설허가제」와 1965년 「업무용 건축물 신축허가제」가 시행됨
 - 런던 수도권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인구와 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영국 북부 지역과의 지역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함
- 규제 폐지 배경 : 유럽 지역 간 경쟁 심화 및 급속한 세계화 →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됨
 - 1982년, 공장 개설 허가제와 업무용 건축물 신축 허가제 완전 폐지
- 1990년대 이후(노동당 집권 후) 기존 시가지의 종합적인 재생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를 부흥(urban renaissance)하고자 하는 도시재생 정책이 수립

표 3-5 | 영국 수도권 규제 정책 변화

| 구분 | 정책내용 |
|--------------------|---|
| 규제 도입기 (1940년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런던권의 인구 분산을 목표로 신도시 개발을 제안한 발로우 보고서(1940)에서 시작 → 1944년 대런던계획의 수립과 함께 더욱 구체화되었으며, 1947년 「도시 및 농촌계획법」 제정을 통해 대런던권이 개발제한구역 제도로 지정됨 • 1945년, 「공장개설허가제(IDC, Industrial Development Certificates)」 시행: 「공업배치법」과 「도시 및 농촌계획법」에 근거하여 도입된 제도로 런던과 그 주변 지역에서 건축 면적이 465㎡를 초과하는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우 상무성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 • 런던권 공장입지를 규제하고 공장을 지방으로의 분산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 • 수도권 입지 규제와 지방 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었던 점에서 특징적 |
| 규제 강화기 (1960년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용 건축물 신축허가제」(Office Development Permits, ODP) 시행(1965년) : 런던권의 사무실 입지를 제한함으로써 지방으로의 분산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 • 규제 대상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건축물 신축허가를 받도록 규정 : 공장개설허가제는 공장의 지방 분산을 지원하는 제도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는 반면, 업무용 건축물 신축허가제는 입지규제에 집중 |
| 규제 과도기 (1970년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개설허가제는 초기 465㎡를 초과하는 면적에 규제 적용 → 1976년 1,162㎡ 초과 면적으로 기준 완화 → 1979년 4,645㎡ 초과 면적으로 기준 추가 완화 • 업무용 건축물 신축허가제의 경우, 1970년부터 규제 대상 지역이 Southeast 지역으로 축소. 기준 면적도 규제 도입 당시인 1965년에는 279㎡이었으나, 1977년에는 2,790㎡로 대폭 상향 • 수도권 외곽 개발지역으로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추진 |

| | |
|-------------------------|---|
| 규제 완화기 (1980년대 ~ 현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개설허가제(1982년) 및 업무용 건축물 신축허가제(1979년) 완전 폐지 • 1970년대 영국 경제는 국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IMF 자금 지원을 받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적으로는 유럽 통합이 진행되며 프랑스 파리 대도시권과의 경쟁에서 런던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됨 → 고급 인재 양성과 비즈니스 서비스 역량 강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 발전이 요구됨 |
|-------------------------|---|

자료 : 이창호(2013), 「수도권규제 관련 해외 정책 동향과 향후 과제」 외 종합

□ 정책방향 전환 배경

○ 입지규제 정책의 부작용 인식

- 사무실허가제로 1967년 전국사무용건물 신축허가 건수의 1/3을 차지하던 런던지역에서 점차 그 비율이 줄어드는 등 사무실 면적 규제 측면에서는 효과가 발생
- 하지만 기존 건물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의 원인이 되며 런던의 재정·금융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 1972년에는 기업 본사 건물 신축을 규제하는 동시에 외국 기관의 사무실 임대료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통해 해당 규제는 1979년에 폐지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우선시하는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

- 1976년 IMF위기, 1970년대 런던권 경제침체를 겪으며 수도권 규제에 대한 비판 대두
- 런던과 파리를 잇는 영불터널의 개통 및 EU통합으로 파리권과의 경쟁에 관심
- 1990년대 보수당의 집권과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정책우선순위의 전환하여 런던권의 성장에 따른 파급효과를 기대
- 지역격차 해소문제보다 사회계층 간 격차 해소 및 복지에 관심

□ 최근 정책 동향

○ 노동당 집권 이후 1990년대부터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재생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의 부흥(urban renaissance), 즉 '도시재생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

- 도시재생이란 “쇠퇴한 지역에 대한 처방을 개별 사업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계획 틀에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하여,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가는 통합적인 접근(integrated approach)”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영국의 지역정책부터 수도권 규제완화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정책 흐름은 영국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런던권의 발전을 피하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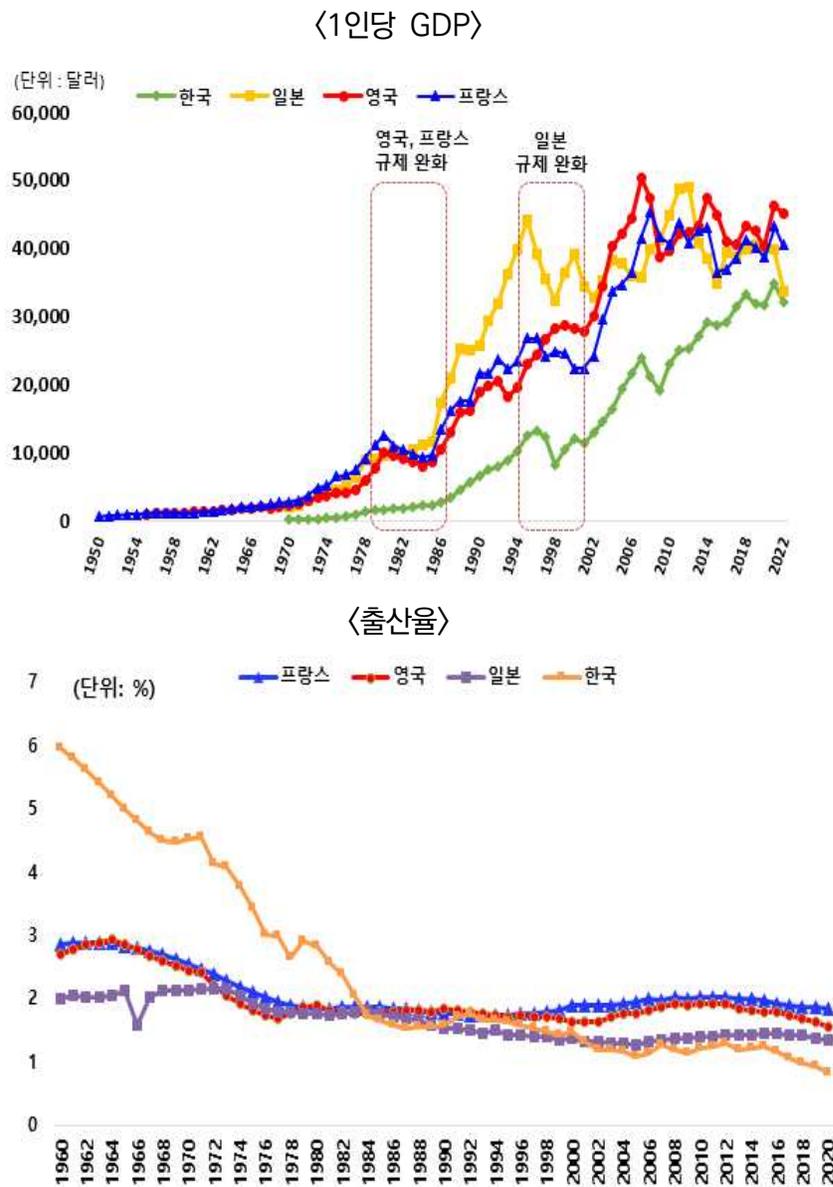
- 이 결과, 런던은 기업과 은행의 입지가 촉진되어 국제 금융 및 비즈니스 중심지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며, 전 세계 증시(거래량)에서 런던 증시는 약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 특히, 뉴욕, 파리, 베를린, 도쿄 등 세계 거대도시와의 경쟁을 증시하며, 영국 내 균형발전보다 세계 주요 거대도시와의 경쟁에 치중

제4절 해외사례 종합 및 시사점

1. 종합

- 일본, 영국, 프랑스, 80년대부터 규제 완화하며 수도권 성장 관리
- 경제성장 약화기, 인구감소기 시기 수도권 규제정책 완화를 통해 GDP 개선 및 출산율 증가세로의 전환 등 경쟁력 강화

그림 3-5 |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의 1인당 GDP 및 출산율 비교



자료 : (상) 통계청, (하) OECD

□ 수도권정책은 대도시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에 중점. 지방발전정책은 분권시스템으로 전환

표 3-6 | 수도권 정책 변화 과정 해외 사례

| 구분 | 일본 | 영국 | 프랑스 |
|--------|---|---|--|
| 규제 도입기 | 1950년대 | 1940년대 | 1950년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6년 「수도권정비법」과 1959년 「수도권기성시기지의 공장 등 제한법」이 제정 - 인구 및 산업의 도쿄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45년 '공장개설허가제' 시행 - 런던 권역 내 공장입지 제한하며, 지방으로의 분산을 유도하고 지방 입지에 대한 지원정책을 병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5년 '공장설립허가제' 도입 - 지방 지역으로 공장 분산 입지 촉진 |
| 규제 강화기 | 1960 ~ 70년대 | 1960년대 | 1960년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4년 「경제권 기성시기지의 공장 등 제한법」과 1972년 「공업 재배치 촉진법」이 제정 - 기존의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과밀 공업 지역에서 공업 집적도가 낮은 지역으로의 공장 이전을 유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5년 '업무용 건축물 신축 허가제' 시행 - 런던권 내 사무실 입지를 규제하고 지방으로의 분산을 유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0년 파리과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과밀부담금제'가 도입되어 신규 개발을 억제 |
| 규제 과도기 | 1980년대 말 ~ 90년대 | 1970년대 | 1970년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8년 「다극분산형국토조성촉진법」 및 「국가행정기관 등 이전 기본방침」을 기반으로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을 본격화하고 수도권 규제의 실효성을 재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장 개설 허가제의 규제를 완화하고, 업무용 건축물 신축 허가제 규제 적용 지역을 축소하며 기존 면적을 상향 조정 외국 기관 사무실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규제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와 위기 의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 |
| 규제 완화기 | 1990년대 말 ~ 현재 | 1980년대 ~ 현재 | 1980년대 ~ 현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전반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 - 글로벌 경쟁 심화와 일본의 경제 위상 확보에 대응 수도권 정책의 중심 기조가 기존의 '규제'에서 벗어나 '수도권 기능 강화와 재편'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를 위해 '특구 전략(규제 개혁의 수단)이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2년 공장 개설 허가제 및 업무용 건축물 신축 허가제 완전폐지 - 유럽 통합에 대응하고 파리 대도시권과의 경쟁에서 런던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2년 과밀 부담금 적용 대상을 축소하고, 1985년에는 공장설립 허가제를 파리 중심부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완전 폐지함 2004년에 파리권의 위상을 강화하고 수도권 전략을 대대적으로 전환하며 수도권 규제를 국토개발청(DATAR)의 정책 목표에서 제외 국토개발청(DATAR)은 지역 경쟁력 강화 개발청(DIAC)으로 개편 |

자료 : 이창호(2013) 외 자료 종합

2. 시사점

- 주요 선진국들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토 불균형과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수도권 규제정책을 시행했으나, 최근에는 국제적인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흐름을 보임

 - 수도권 규제 완화와 더불어 중심 시가지 활성화와 도시 재생 등 지역 발전 정책을 병행하며 지방 중소도시를 체계적으로 지원
 - 과거 수도권 규제 중심의 정책은 현재 경쟁력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주요 선진국의 공통된 동향이 됨
-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본,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들은 지난 1980년대 이후 수도권 규제정책을 완화하며 분권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루어냄

 - 대도시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수도권 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는 한편, 지방 발전은 지역 주도로 이루어지도록 분권 시스템으로 전환
 - 중앙정부는 지역 발전에 대한 기본 방향 설정과 부처 간 업무 조정을 담당하며, 체계적인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있음
- 주요 선진국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

 - 수도권 규제 완화와 더불어 중심 시가지 활성화, 도시 재생 등의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여 지방 중소도시의 재정비를 소홀히 하지 않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
- 국가 차원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고 법률 제정을 통해 지방의 중소도시들을 지원

 - 행정구역 단위의 접근이 아닌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자립적 경제권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지역발전 정책이 추진됨
 - 이에 따라 「중심시가지활성화법」과 「SRU법」 등을 제정하여 지방 중소도시 지원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규제 방식보다는 지원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수도권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을 통해 비수도권과의 균형 발전을 추구

제4장

기업 인식조사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조사 결과

제3절 인식조사 종합

제4장 기업 인식조사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설계

□ 조사 배경

- 과거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이 4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 필요

□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로 인하여 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탐색하고 기업 성장 및 신규 기업유치를 위해 규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 조사 대상 및 표본 오차

- 경기도 소재의 기업 627개 사(± 5.15%p 내 오차범위)
 - 수원시 내 기업 327개 사
 - 수원시 외 기업 300개 사

□ 조사 방법

- 전화면접조사를 통한 기업 조사 의향 확인 → 조사 희망 기업 대상 온라인조사 실시

2. 조사 일정

- 조사 설계 및 조사 준비 : 8월 5일 (월) ~ 8월 14일 (수)
- 조사 기간 : 8월 15일 (목) ~ 10월 8일 (화)

3. 주요 조사내용

□ 기본문항

- 기업명, 설립년도
- 기업 유형
- 업종
 - 제조업 세부업종
 - 비제조업 세부업종
- 법인유형
- 종사자 수
- 매출규모
- 주 사업장 위치(Screening 문항)

□ 본 문항(20문항)

- (관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인지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피해 경험 여부, 구체적인 피해 사례, 타 지역 이전 고려 경험 여부, 타 지역 이전 고려 이유, 타 지역 이전 비고려 이유, 주 사업장 위치
- (관외) 수원시 내 기업활동 의향 여부, 수원시 기업활동 의향 이유, 수원시 기업활동 비의향 이유, 수원시 이전 고려 경험 여부, 수원시 이전 고려 이유, 수원시 이전 비고려 이유, 중과세 제도 개선 완화가 기업활동에 주는 영향, 중과세 제도 개선 완화시 촉매제 가능성, 중과세 제도 개선시 수원시 내 신규법인 설립/지점설치 의향, 수원시로의 입지를 위한 필요사항 및 개선사항
- (공통) 기업 운영 애로사항, 정책적 지원 필요사항

4. 응답기업 특성표

표 4-1 | 응답기업 특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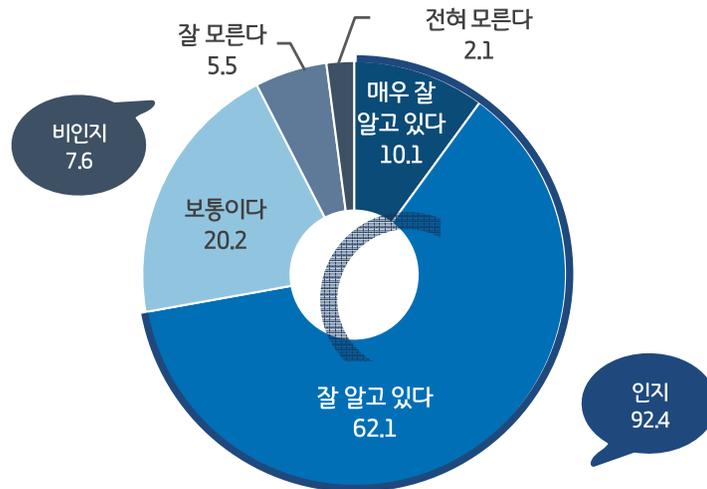
| 구분 | | 사례수 | % |
|----------|---------------|-------|-------|
| 전체 | | (627) | 100.0 |
| 주 사업장 위치 | 수원시 내 | (327) | 52.2 |
| | 수원시 외 | (300) | 47.8 |
| 수원시 내 위치 | 산업단지(델타플렉스) | (84) | 25.7 |
| | 지식산업센터 | (24) | 7.3 |
| | 개별 사업장 운영 | (219) | 67.0 |
| 설립년도 | 2000년 이전 | (103) | 16.4 |
| | 2001~2010년 | (219) | 34.9 |
| | 2011~2020년 | (291) | 46.4 |
| | 2021년 이후 | (14) | 2.2 |
| 기업형태 | 소기업 | (307) | 49.0 |
| | 중기업 | (320) | 51.0 |
| 업종 | 제조업 | (289) | 46.1 |
| | 비제조업 | (338) | 53.9 |
| 법인유형 | 영리법인 | (625) | 99.7 |
| | 기타 | (2) | 0.3 |
| 종사자수 | 5인 미만 | (142) | 22.6 |
| | 5~50인 미만 | (468) | 74.6 |
| | 50~100인 미만 | (13) | 2.1 |
| | 100~200인 미만 | (2) | 0.3 |
| | 200~300인 미만 | (2) | 0.3 |
| 매출 규모 | 10억 미만 | (135) | 21.5 |
| | 10~50억 미만 | (304) | 48.5 |
| | 50~100억 미만 | (95) | 15.2 |
| | 100~500억 미만 | (84) | 13.4 |
| | 500~1,000억 미만 | (6) | 1.0 |
| | 1,000억 이상 | (3) | 0.5 |

제2절 조사 결과

1. (관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인지도

- 수원시 관내 기업들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규제를 알고 있다는 응답 92.4%, 그 중 '잘 알고 있다'는 응답 62.1%로 규제의 내용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기업특성별로는 기업형태가 중기업(96.4%)일 때, 소기업(88.2%)보다 규제 인지도가 높음
- 지식산업센터의 인지도는 87.5%로 비교적 낮게 확인

그림 4-1 | (관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인지도



(수원시 관내 기업 : n=327, 단위 : %)

표 4-2 | (관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인지도

| 구분 | | 사례수 | 매우 잘 알고 있다 | 잘 알고 있다 | 알고 있다 | 잘 모른다 | 전혀 모른다 | 인지 | 비인지 |
|----------|-------------|-------|------------|---------|-------|-------|--------|------|------|
| 전체 | | (327) | 10.1 | 62.1 | 20.2 | 5.5 | 2.1 | 92.4 | 7.6 |
| 수원시 내 위치 | 산업단지(델타플렉스) | (84) | 6.0 | 65.5 | 20.2 | 4.8 | 3.6 | 91.7 | 8.3 |
| | 지식산업센터 | (24) | 0.0 | 54.2 | 33.3 | 12.5 | 0.0 | 87.5 | 12.5 |
| | 개별 사업장 운영 | (219) | 12.8 | 61.6 | 18.7 | 5.0 | 1.8 | 93.2 | 6.8 |
| 설립년도 | 2000년 이전 | (46) | 6.5 | 63.0 | 21.7 | 6.5 | 2.2 | 91.3 | 8.7 |
| | 2001~2010년 | (111) | 7.2 | 66.7 | 18.9 | 5.4 | 1.8 | 92.8 | 7.2 |
| | 2011~2020년 | (159) | 13.8 | 59.1 | 20.1 | 5.0 | 1.9 | 93.1 | 6.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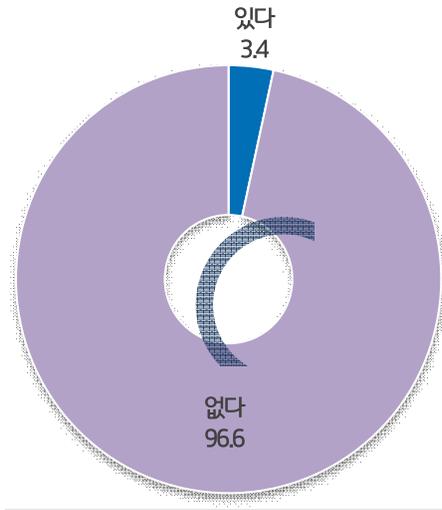
| | | | | | | | | | |
|-------|---------------|-------|-------|-------|------|-----|-------|-------|-------|
| | 2021년 이후 | (11) | 0.0 | 54.5 | 27.3 | 9.1 | 9.1 | 81.8 | 18.2 |
| 기업형태 | 소기업 | (161) | 12.4 | 56.5 | 19.3 | 8.1 | 3.7 | 88.2 | 11.8 |
| | 중기업 | (166) | 7.8 | 67.5 | 21.1 | 3.0 | 0.6 | 96.4 | 3.6 |
| 업종 | 제조업 | (154) | 7.1 | 64.3 | 21.4 | 4.5 | 2.6 | 92.9 | 7.1 |
| | 비제조업 | (173) | 12.7 | 60.1 | 19.1 | 6.4 | 1.7 | 91.9 | 8.1 |
| 법인유형 | 영리법인 | (325) | 10.2 | 62.5 | 20.3 | 5.5 | 1.5 | 92.9 | 7.1 |
| | 기타 | (2) | 0.0 | 0.0 | 0.0 | 0.0 | 100.0 | 0.0 | 100.0 |
| 종사자수 | 5인 미만 | (87) | 16.1 | 58.6 | 17.2 | 4.6 | 3.4 | 92.0 | 8.0 |
| | 5~50인 미만 | (230) | 7.8 | 62.6 | 21.7 | 6.1 | 1.7 | 92.2 | 7.8 |
| | 50~100인 미만 | (9) | 0.0 | 88.9 | 11.1 | 0.0 | 0.0 | 100.0 | 0.0 |
| | 200~300인 미만 | (1) | 10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 매출 규모 | 10억 미만 | (74) | 21.6 | 59.5 | 12.2 | 4.1 | 2.7 | 93.2 | 6.8 |
| | 10~50억 미만 | (158) | 7.6 | 61.4 | 20.9 | 7.6 | 2.5 | 89.9 | 10.1 |
| | 50~100억 미만 | (48) | 6.3 | 62.5 | 27.1 | 4.2 | 0.0 | 95.8 | 4.2 |
| | 100~500억 미만 | (42) | 2.4 | 71.4 | 21.4 | 2.4 | 2.4 | 95.2 | 4.8 |
| | 500~1,000억 미만 | (4) | 25.0 | 25.0 | 50.0 | 0.0 | 0.0 | 100.0 | 0.0 |
| | 1,000억 이상 | (1)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수원시 관내 기업 : n=327, 단위 : %)

2. (관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피해 경험 및 사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기업 3.4%, 없는 기업 96.6%
 - 설립연도가 2021년 이후인 경우 피해 경험이 18.2%로 신생기업에서 피해를 입은 경험이 비교적 높음
- 피해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구체적인 피해는 '중과세/세금 부담이 큼' 6건, '산업단지 추가 조성이 되지 않아 신규공장을 분양 받을 수 없음' 2건, '법인설립비 부담이 큼' 2건 등

그림 4-2 | (관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피해 경험 여부



(수원시 관내 기업 : n=327, 단위 : %)

표 4-3 | (관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피해 경험 여부

| 구분 | | 사례수 | 있다 | 없다 |
|-------------|-------------|-------|-------|-------|
| 전체 | | (327) | 3.4 | 96.6 |
| 수원시 내 위치 | 산업단지(델타플렉스) | (84) | 7.1 | 92.9 |
| | 지식산업센터 | (24) | 8.3 | 91.7 |
| | 개별 사업장 운영 | (219) | 1.4 | 98.6 |
| 설립년도 | 2000년 이전 | (46) | 4.3 | 95.7 |
| | 2001~2010년 | (111) | 1.8 | 98.2 |
| | 2011~2020년 | (159) | 3.1 | 96.9 |
| | 2021년 이후 | (11) | 18.2 | 81.8 |
| 기업형태 | 소기업 | (161) | 5.6 | 94.4 |
| | 중기업 | (166) | 1.2 | 98.8 |
| 업종 | 제조업 | (154) | 6.5 | 93.5 |
| | 비제조업 | (173) | 0.6 | 99.4 |
| 법인유형 | 영리법인 | (325) | 2.8 | 97.2 |
| | 기타 | (2) | 100.0 | 0.0 |
| 종사자수 | 5인 미만 | (87) | 6.9 | 93.1 |
| | 5~50인 미만 | (230) | 2.2 | 97.8 |
| | 50~100인 미만 | (9) | 0.0 | 100.0 |
| | 200~300인 미만 | (1) | 0.0 | 100.0 |
| 매출 규모 | 10억 미만 | (74) | 8.1 | 91.9 |
| | 10~50억 미만 | (158) | 2.5 | 97.5 |

| | | | |
|---------------|------|-----|-------|
| 50~100억 미만 | (48) | 0.0 | 100.0 |
| 100~500억 미만 | (42) | 2.4 | 97.6 |
| 500~1,000억 미만 | (4) | 0.0 | 100.0 |
| 1,000억 이상 | (1) | 0.0 | 100.0 |

(수원시 관내 기업 : n=327, 단위 : %)

표 4-4 | (관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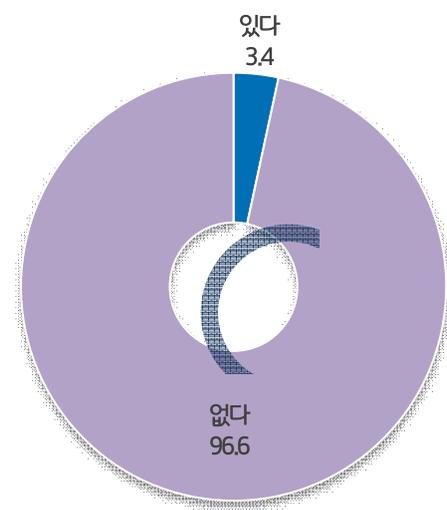
| 구분 | 사례수 | % |
|------------------------------------|-------------|--------------|
| 전체 | (11) | 100.0 |
| 중과세/세금 부담이 큼 | (6) | 54.5 |
| 산업단지 추가 조성이 되지 않아 신규공장을 분양 받을 수 없음 | (2) | 18.2 |
| 법인설립비 부담이 큼 | (2) | 18.2 |
|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적용을 받아 공장용지 매입에 어려움 | (1) | 9.1 |

(수원시 외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한 기업 : n=11, 단위 : %)

3. (관내) 타 지역 이전 고려 경험 여부

- 전체 설문 기업 중 3.4%의 기업이 수원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했던 것으로 응답
 - 응답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에 위치(8.3%)해 있거나 설립연도가 2021년 이후(9.1%)인 경우 고려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4-3 | (관내) 타 지역 이전 고려 경험 여부



(수원시 관내 기업 : n=327, 단위 : %)

표 4-5 | (관내) 타 지역 이전 고려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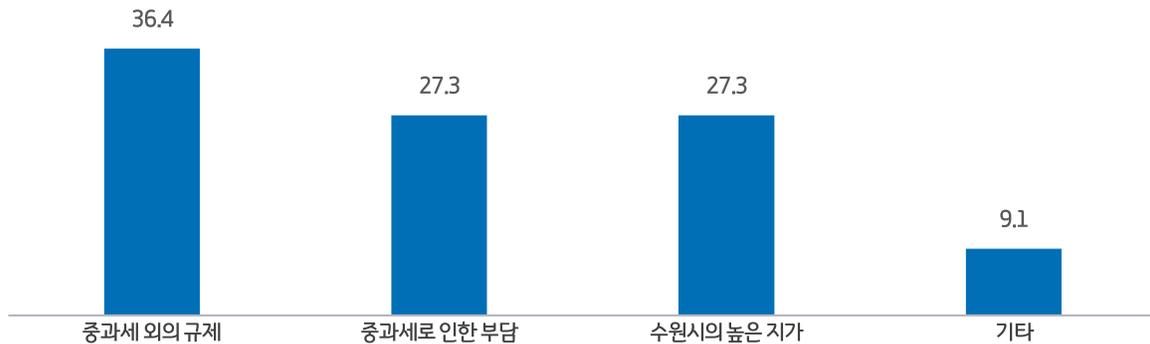
| 구분 | | 사례수 | 있다 | 없다 |
|-------------|---------------|-------|-----|-------|
| 전체 | | (327) | 3.4 | 96.6 |
| 수원시 내 위치 | 산업단지(델타플렉스) | (84) | 6.0 | 94.0 |
| | 지식산업센터 | (24) | 8.3 | 91.7 |
| | 개별 사업장 운영 | (219) | 1.8 | 98.2 |
| 설립년도 | 2000년 이전 | (46) | 4.3 | 95.7 |
| | 2001~2010년 | (111) | 2.7 | 97.3 |
| | 2011~2020년 | (159) | 3.1 | 96.9 |
| | 2021년 이후 | (11) | 9.1 | 90.9 |
| 기업형태 | 소기업 | (161) | 5.0 | 95.0 |
| | 중기업 | (166) | 1.8 | 98.2 |
| 업종 | 제조업 | (154) | 5.8 | 94.2 |
| | 비제조업 | (173) | 1.2 | 98.8 |
| 법인유형 | 영리법인 | (325) | 3.4 | 96.6 |
| | 기타 | (2) | 0.0 | 100.0 |
| 종사자수 | 5인 미만 | (87) | 3.4 | 96.6 |
| | 5~50인 미만 | (230) | 3.5 | 96.5 |
| | 50~100인 미만 | (9) | 0.0 | 100.0 |
| | 200~300인 미만 | (1) | 0.0 | 100.0 |
| 매출 규모 | 10억 미만 | (74) | 4.1 | 95.9 |
| | 10~50억 미만 | (158) | 3.2 | 96.8 |
| | 50~100억 미만 | (48) | 2.1 | 97.9 |
| | 100~500억 미만 | (42) | 4.8 | 95.2 |
| | 500~1,000억 미만 | (4) | 0.0 | 100.0 |
| | 1,000억 이상 | (1) | 0.0 | 100.0 |

(수원시 관내 기업 : n=327, 단위 : %)

1) (관내) 타 지역 이전 고려 이유

- 수원 외 타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한 이유로는 과밀부담금, 공장 총량 규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등 '중과세 외의 규제'가 36.4%로 가장 높았고, '중과세로 인한 부담', '수원시의 높은 지가'가 각 27.3% 차지

그림 4-4 | (관내) 타 지역 이전 고려 이유



(수원시에서 이전을 고려한 기업 : n=11, 단위 : %)

표 4-6 | (관내) 타 지역 이전 고려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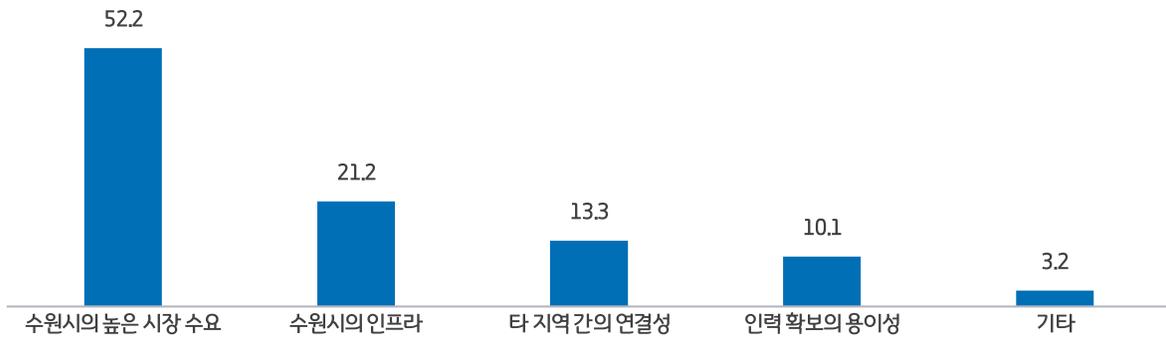
| 구분 | | 사례수 | 중과세 외의 규제 | 중과세로 인한 부담 | 수원시의 높은 지가 | 기타 |
|-------------|-------------|------|--------------|---------------|---------------|-------|
| 전체 | | (11) | 36.4 | 27.3 | 27.3 | 9.1 |
| 수원시 내 위치 | 산업단지(델타플렉스) | (5) | 60.0 | 0.0 | 40.0 | 0.0 |
| | 지식산업센터 | (2) | 50.0 | 50.0 | 0.0 | 0.0 |
| | 개별 사업장 운영 | (4) | 0.0 | 50.0 | 25.0 | 25.0 |
| 설립년도 | 2000년 이전 | (2) | 0.0 | 0.0 | 100.0 | 0.0 |
| | 2001~2010년 | (3) | 66.7 | 33.3 | 0.0 | 0.0 |
| | 2011~2020년 | (5) | 40.0 | 40.0 | 20.0 | 0.0 |
| | 2021년 이후 | (1) | 0.0 | 0.0 | 0.0 | 100.0 |
| 기업형태 | 소기업 | (8) | 25.0 | 37.5 | 25.0 | 12.5 |
| | 중기업 | (3) | 66.7 | 0.0 | 33.3 | 0.0 |
| 업종 | 제조업 | (9) | 44.4 | 33.3 | 22.2 | 0.0 |
| | 비제조업 | (2) | 0.0 | 0.0 | 50.0 | 50.0 |
| 법인유형 | 영리법인 | (11) | 36.4 | 27.3 | 27.3 | 9.1 |
| 종사자수 | 5인 미만 | (3) | 0.0 | 66.7 | 33.3 | 0.0 |
| | 5~50인 미만 | (8) | 50.0 | 12.5 | 25.0 | 12.5 |
| 매출 규모 | 10억 미만 | (3) | 33.3 | 33.3 | 33.3 | 0.0 |
| | 10~50억 미만 | (5) | 0.0 | 40.0 | 40.0 | 20.0 |
| | 50~100억 미만 | (1) | 100.0 | 0.0 | 0.0 | 0.0 |
| | 100~500억 미만 | (2) | 100.0 | 0.0 | 0.0 | 0.0 |

(수원시에서 이전을 고려한 기업 : n=11, 단위 : %)

2) (관내) 타 지역 이전 비교려 이유

- 수원 외 타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원시의 높은 시장 수요’가 52.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수원시의 인프라’(21.2%), ‘타 지역 간의 연결성’(13.3%), ‘인력 확보의 용이성’(10.1%) 순
- 산업단지(텔타플렉스)(30.4%)와 지식산업센터(31.8%)의 경우 ‘수원시의 인프라’ 선호도 비교적 높은 수준

그림 4-5 | (관내) 타 지역 이전 비교려 이유



(수원시에서 이전을 고려하지 않은 기업 : n=316, 단위 : %)

;

표 4-7 | (관내) 타 지역 이전 비교려 이유

| 구분 | | 사례수 | 수원시의 높은 시장 수요 | 수원시의 인프라 | 타 지역 간의 연결성 | 인력 확보의 용이성 | 기타 |
|----------|-------------|-------|---------------|----------|-------------|------------|------|
| 전체 | | (316) | 52.2 | 21.2 | 13.3 | 10.1 | 3.2 |
| 수원시 내 위치 | 산업단지(텔타플렉스) | (79) | 48.1 | 30.4 | 11.4 | 8.9 | 1.3 |
| | 지식산업센터 | (22) | 40.9 | 31.8 | 13.6 | 9.1 | 4.5 |
| | 개별 사업장 운영 | (215) | 54.9 | 16.7 | 14.0 | 10.7 | 3.7 |
| 설립년도 | 2000년 이전 | (44) | 56.8 | 20.5 | 9.1 | 11.4 | 2.3 |
| | 2001~2010년 | (108) | 53.7 | 21.3 | 12.0 | 9.3 | 3.7 |
| | 2011~2020년 | (154) | 52.6 | 20.1 | 15.6 | 9.7 | 1.9 |
| | 2021년 이후 | (10) | 10.0 | 40.0 | 10.0 | 20.0 | 20.0 |
| 기업형태 | 소기업 | (153) | 47.1 | 19.6 | 17.0 | 10.5 | 5.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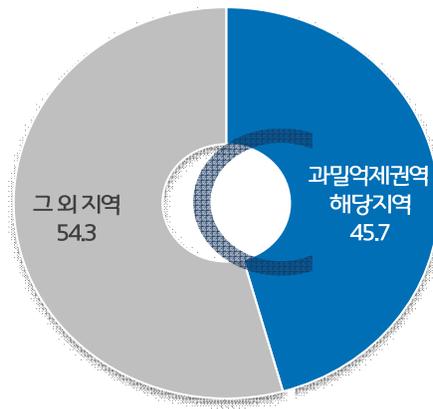
| | | | | | | | |
|-------|---------------|-------|-------|-------|------|------|------|
| | 중기업 | (163) | 57.1 | 22.7 | 9.8 | 9.8 | 0.6 |
| 업종 | 제조업 | (145) | 47.6 | 23.4 | 14.5 | 10.3 | 4.1 |
| | 비제조업 | (171) | 56.1 | 19.3 | 12.3 | 9.9 | 2.3 |
| 법인유형 | 영리법인 | (314) | 52.5 | 21.0 | 13.4 | 10.2 | 2.9 |
| | 기타 | (2) | 0.0 | 50.0 | 0.0 | 0.0 | 50.0 |
| 종사자수 | 5인 미만 | (84) | 51.2 | 15.5 | 14.3 | 8.3 | 10.7 |
| | 5~50인 미만 | (222) | 53.6 | 23.0 | 13.1 | 9.9 | 0.5 |
| | 50~100인 미만 | (9) | 33.3 | 22.2 | 11.1 | 33.3 | 0.0 |
| | 200~300인 미만 | (1) | 0.0 | 100.0 | 0.0 | 0.0 | 0.0 |
| 매출 규모 | 10억 미만 | (71) | 56.3 | 18.3 | 12.7 | 5.6 | 7.0 |
| | 10~50억 미만 | (153) | 48.4 | 20.3 | 15.7 | 12.4 | 3.3 |
| | 50~100억 미만 | (47) | 53.2 | 23.4 | 14.9 | 8.5 | 0.0 |
| | 100~500억 미만 | (40) | 62.5 | 25.0 | 2.5 | 10.0 | 0.0 |
| | 500~1,000억 미만 | (4) | 0.0 | 50.0 | 25.0 | 25.0 | 0.0 |
| | 1,000억 이상 | (1) | 100.0 | 0.0 | 0.0 | 0.0 | 0.0 |

(수원시에서 이전을 고려하지 않은 기업 : n=316, 단위 : %)

4. (관외) 주 사업장 위치

- 수원시 관외 기업 중 '과밀억제권역 해당 지역' 45.7%, '그 외 지역'은 54.3% 비중으로 응답
- 기업형태가 소기업인 경우 '과밀억제권역 해당 지역'이라는 응답이 52.1%, 중기업은 '그 외 지역'이라는 응답이 60.4%
- 업종은 '과밀억제권역 해당 지역'은 비제조업(53.9%)이 높게 나타난 반면 '그 외 지역'은 제조업(64.4%)이 높은 비중으로 확인

그림 4-6 | (관외) 주 사업장 위치



(수원시 관외 기업 : n=300, 단위 : %)

표 4-8 | (관외) 주 사업장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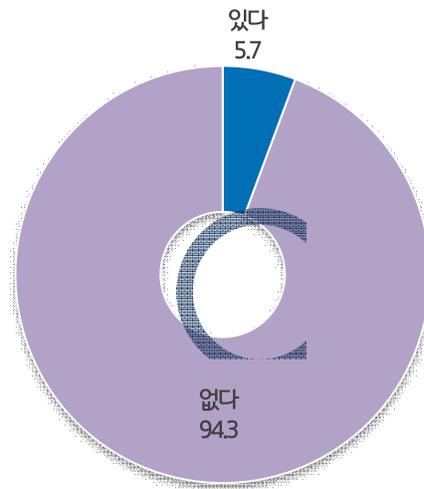
| 구분 | | 사례수 | 과밀억제권역 해당 지역 | 그 외 지역 |
|-------|---------------|-------|--------------|--------|
| 전체 | | (300) | 45.7 | 54.3 |
| 설립년도 | 2000년 이전 | (57) | 47.4 | 52.6 |
| | 2001~2010년 | (108) | 46.3 | 53.7 |
| | 2011~2020년 | (132) | 44.7 | 55.3 |
| | 2021년 이후 | (3) | 33.3 | 66.7 |
| 기업형태 | 소기업 | (146) | 52.1 | 47.9 |
| | 중기업 | (154) | 39.6 | 60.4 |
| 업종 | 제조업 | (135) | 35.6 | 64.4 |
| | 비제조업 | (165) | 53.9 | 46.1 |
| 법인유형 | 영리법인 | (300) | 45.7 | 54.3 |
| 종사자수 | 5인 미만 | (55) | 49.1 | 50.9 |
| | 5~50인 미만 | (238) | 45.0 | 55.0 |
| | 50~100인 미만 | (4) | 25.0 | 75.0 |
| | 100~200인 미만 | (2) | 50.0 | 50.0 |
| | 200~300인 미만 | (1) | 100.0 | 0.0 |
| 매출 규모 | 10억 미만 | (61) | 45.9 | 54.1 |
| | 10~50억 미만 | (146) | 48.6 | 51.4 |
| | 50~100억 미만 | (47) | 29.8 | 70.2 |
| | 100~500억 미만 | (42) | 50.0 | 50.0 |
| | 500~1,000억 미만 | (2) | 100.0 | 0.0 |
| | 1,000억 이상 | (2) | 50.0 | 50.0 |

(수원시 관외 기업 : n=300, 단위 : %)

5. (관외) 수원시 내 기업활동 의향 여부

- 수원시 외에 위치한 기업들 중 수원시에서 기업활동을 할 의향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5.7% 수준
- 종사자 수 50-100인 미만(50%), 매출규모 100-500억 미만(16.7%)의 기업들에서 '있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음

그림 4-7 | (관외) 수원시 내 기업활동 의향 여부



(수원시 관외 기업 : n=300, 단위 : %)

표 4-9 | (관외) 수원시 내 기업활동 의향 여부

| 구분 | | 사례수 | 있다 | 없다 |
|------|-------------|-------|------|-------|
| 전체 | | (300) | 5.7 | 94.3 |
| 설립년도 | 2000년 이전 | (57) | 7.0 | 93.0 |
| | 2001~2010년 | (108) | 5.6 | 94.4 |
| | 2011~2020년 | (132) | 5.3 | 94.7 |
| | 2021년 이후 | (3) | 0.0 | 100.0 |
| 기업형태 | 소기업 | (146) | 4.8 | 95.2 |
| | 중기업 | (154) | 6.5 | 93.5 |
| 업종 | 제조업 | (135) | 3.0 | 97.0 |
| | 비제조업 | (165) | 7.9 | 92.1 |
| 법인유형 | 영리법인 | (300) | 5.7 | 94.3 |
| 종사자수 | 5인 미만 | (55) | 3.6 | 96.4 |
| | 5~50인 미만 | (238) | 5.5 | 94.5 |
| | 50~100인 미만 | (4) | 50.0 | 50.0 |
| | 100~200인 미만 | (2) | 0.0 | 100.0 |

| | | | | |
|-------|---------------|-------|------|-------|
| | 200~300인 미만 | (1) | 0.0 | 100.0 |
| 매출 규모 | 10억 미만 | (61) | 1.6 | 98.4 |
| | 10~50억 미만 | (146) | 6.2 | 93.8 |
| | 50~100억 미만 | (47) | 0.0 | 100.0 |
| | 100~500억 미만 | (42) | 16.7 | 83.3 |
| | 500~1,000억 미만 | (2) | 0.0 | 100.0 |
| | 1,000억 이상 | (2) | 0.0 | 100.0 |

(수원시 관외 기업 : n=300, 단위 : %)

1) (관외) 수원시 기업활동 의향/비의향 이유

- 수원시에서 기업활동 할 의향이 있는 이유 : ‘전국에 납품하기에 수원시가 용이해서’가 4건으로 가장 많고, ‘기업 활동 하기 어려워서’(관내에서), ‘새로운 고객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기업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서’가 각각 3건
- 수원시에서 기업활동할 의향이 없는 이유 : ‘현재 확보한 고객을 놓치기 어려워서’ 98건, 다음으로 ‘거리가 멀어서’(55건), ‘수원시로 이전을 위한 자금이 부족해서’(45건), ‘현 사업장에 만족해서’(30건) 등의 순

표4-10 | (관외) 수원시 기업활동 의향/비의향 이유

| 구분 | 사례수 | % |
|----------------------|--------------|--------------|
| 의향 이유 전체 | (17) | 100.0 |
| 전국에 납품하기에 수원시가 용이해서 | (4) | 23.5 |
| 기업활동 하기 어려워서(관내에서) | (3) | 17.6 |
| 새로운 고객 확보를 위해서 | (3) | 17.6 |
| 다양한 기업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서 | (3) | 17.6 |
| 고객 확보가 용이 해서 | (2) | 11.8 |
| 거리가 가까워서 | (1) | 5.9 |
| 취득세나 증과세완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 (1) | 5.9 |
| 비의향 이유 전체 | (283) | 100.0 |
| 현재 확보한 고객을 놓치기 어려워서 | (98) | 34.6 |
| 거리가 멀어서 | (55) | 19.4 |
| 수원시로 이전을 위한 자금이 부족해서 | (45) | 15.9 |
| 현 사업장에 만족해서 | (30) | 10.6 |
| 현재는 기업 이전을 염두하지 않음 | (28) | 9.9 |
| 소규모라서 | (13) | 4.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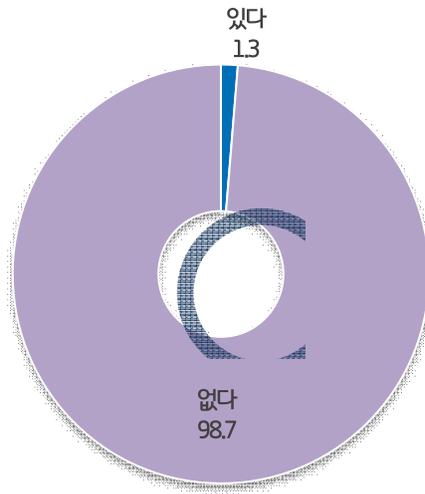
| | | |
|------------------------|------|-----|
| 타 지역에서 기업활동하는 게 더 유리해서 | (10) | 3.5 |
| 기업 이전이 쉽지 않아서 | (10) | 3.5 |
| 숙련된 인력 확보가 어려워서 | (7) | 2.5 |
| 수원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해서 | (5) | 1.8 |

(수원시 관외 기업 : n=300, 단위 : %)

6. (관외) 수원시 이전 고려 경험 여부

□ 관외기업 중 수원시로 이전을 고려한 적이 '있다' 1.3%, '없다' 98.7%

그림 4-8 | (관외) 수원시 이전 고려 경험 여부



(수원시 관외 기업 : n=300, 단위 : %)

표 4-11 | (관외) 수원시 이전 고려 경험 여부

| 구분 | | 사례수 | 있다 | 없다 |
|------|------------|-------|-----|-------|
| 전체 | | (300) | 1.3 | 98.7 |
| 설립년도 | 2000년 이전 | (57) | 1.8 | 98.2 |
| | 2001~2010년 | (108) | 0.0 | 100.0 |
| | 2011~2020년 | (132) | 2.3 | 97.7 |
| | 2021년 이후 | (3) | 0.0 | 100.0 |
| 기업형태 | 소기업 | (146) | 0.7 | 99.3 |
| | 중기업 | (154) | 1.9 | 98.1 |
| 업종 | 제조업 | (135) | 1.5 | 98.5 |
| | 비제조업 | (165) | 1.2 | 98.8 |
| 법인유형 | 영리법인 | (300) | 1.3 | 98.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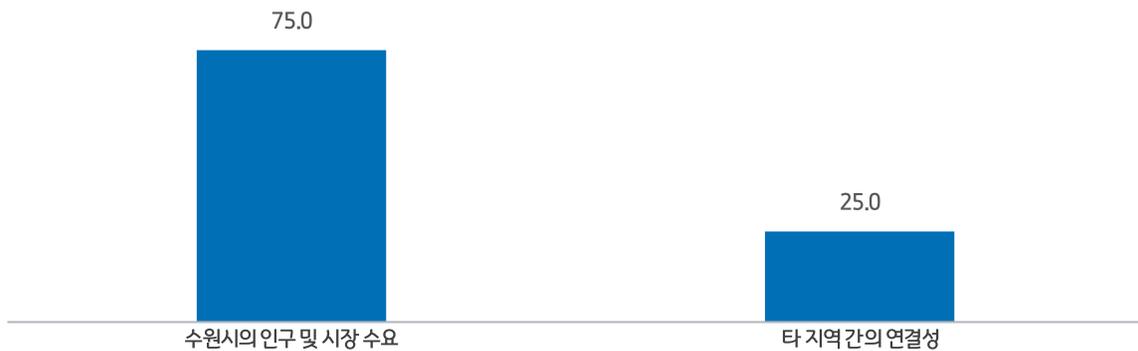
| | | | | |
|-------|---------------|-------|-----|-------|
| 종사자수 | 5인 미만 | (55) | 1.8 | 98.2 |
| | 5~50인 미만 | (238) | 1.3 | 98.7 |
| | 50~100인 미만 | (4) | 0.0 | 100.0 |
| | 100~200인 미만 | (2) | 0.0 | 100.0 |
| | 200~300인 미만 | (1) | 0.0 | 100.0 |
| 매출 규모 | 10억 미만 | (61) | 0.0 | 100.0 |
| | 10~50억 미만 | (146) | 2.1 | 97.9 |
| | 50~100억 미만 | (47) | 0.0 | 100.0 |
| | 100~500억 미만 | (42) | 2.4 | 97.6 |
| | 500~1,000억 미만 | (2) | 0.0 | 100.0 |
| | 1,000억 이상 | (2) | 0.0 | 100.0 |

(수원시 관외 기업 : n=300, 단위 : %)

1) (관외) 수원시로의 이전 고려 이유

- 수원시로의 이전을 고려한 이유로 '수원시의 인구 및 시장 수요' 75.0%, '타 지역 간의 연결성' 25.0%

그림 4-9 | (관외) 수원시 이전 고려 이유



(수원시로 이전을 고려한 기업 : n=4, 단위 : %)

표 4-12 | (관외) 수원시 이전 고려 이유

| 구분 | | 사례수 | 수원시의 인구 및 시장 수요 | 타 지역 간의 연결성 |
|-------|-------------|-------|-----------------|-------------|
| 전체 | | (300) | 75.0 | 25.0 |
| 설립년도 | 2000년 이전 | (57) | 100.0 | 0.0 |
| | 2011~2020년 | (132) | 66.7 | 33.3 |
| 기업형태 | 소기업 | (146) | 100.0 | 0.0 |
| | 중기업 | (154) | 66.7 | 33.3 |
| 업종 | 제조업 | (135) | 100.0 | 0.0 |
| | 비제조업 | (165) | 50.0 | 50.0 |
| 법인유형 | 영리법인 | (300) | 75.0 | 25.0 |
| 종사자수 | 5인 미만 | (55) | 100.0 | 0.0 |
| | 5~50인 미만 | (238) | 66.7 | 33.3 |
| 매출 규모 | 10~50억 미만 | (146) | 66.7 | 33.3 |
| | 100~500억 미만 | (42) | 100.0 | 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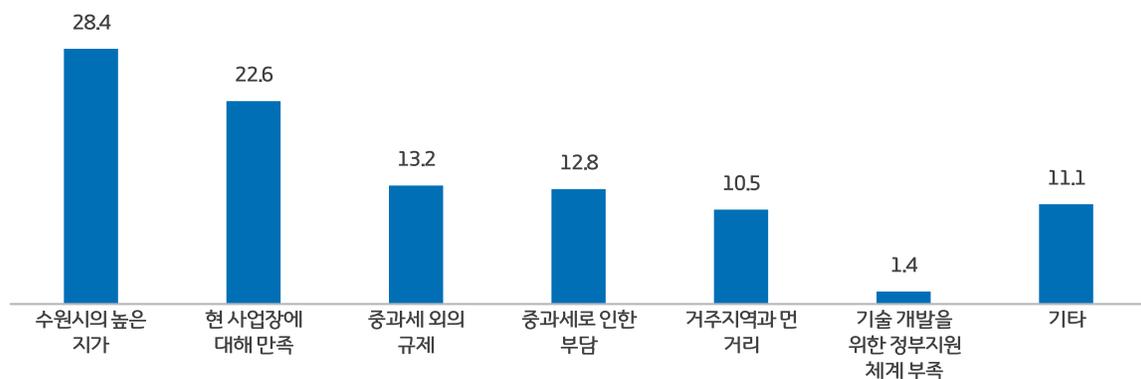
(수원시로 이전을 고려한 기업 : n=4, 단위 : %)

2) (관외) 수원시 이전 비고려 이유

□ 수원시로의 이전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수원시의 높은 지가’가 28.4%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현 사업장에 대해 만족’(22.6%), ‘중과세 외의 규제’(13.2%), ‘중과세로 인한 부담’(12.8%), ‘거주지역과 먼 거리’(10.5%) 등의 순

○ 매출 규모가 50 ~ 100억 미만인 사업체의 경우 ‘현 사업장에 대해 만족’(29.8%)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10 | (관외) 수원시 이전 비고려 이유



(수원시로 이전을 고려하지 않은 기업 : n=296, 단위 : %)

표 4-13 | (관외) 수원시 이전 비교려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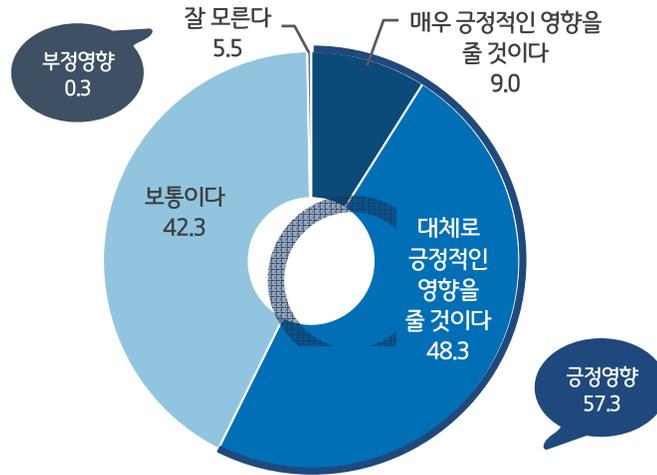
| 구분 | 사례수 | 수원시의 높은 지가 | 현 사업장에 대해 만족 | 중과세 외의 규제 | 중과세로 인한 부담 | 거주지역과 먼 거리 |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지원 체계 부족 | 기타 | |
|-------|---------------|------------|--------------|-----------|------------|------------|----------------------|------|------|
| 전체 | (296) | 28.4 | 22.6 | 13.2 | 12.8 | 10.5 | 1.4 | 11.1 | |
| 설립년도 | 2000년 이전 | (56) | 23.2 | 17.9 | 17.9 | 16.1 | 12.5 | 3.6 | 8.9 |
| | 2001~2010년 | (108) | 32.4 | 25.9 | 11.1 | 13.9 | 8.3 | 0.0 | 8.3 |
| | 2011~2020년 | (129) | 27.9 | 20.9 | 13.2 | 10.9 | 10.9 | 1.6 | 14.7 |
| | 2021년 이후 | (3) | 0.0 | 66.7 | 0.0 | 0.0 | 33.3 | 0.0 | 0.0 |
| 기업형태 | 소기업 | (145) | 28.3 | 27.6 | 8.3 | 9.7 | 12.4 | 0.0 | 13.8 |
| | 중기업 | (151) | 28.5 | 17.9 | 17.9 | 15.9 | 8.6 | 2.6 | 8.6 |
| 업종 | 제조업 | (133) | 27.1 | 20.3 | 15.8 | 12.8 | 9.8 | 0.8 | 13.5 |
| | 비제조업 | (163) | 29.4 | 24.5 | 11.0 | 12.9 | 11.0 | 1.8 | 9.2 |
| 법인유형 | 영리법인 | (296) | 28.4 | 22.6 | 13.2 | 12.8 | 10.5 | 1.4 | 11.1 |
| 종사자수 | 5인 미만 | (54) | 38.9 | 25.9 | 9.3 | 7.4 | 11.1 | 0.0 | 7.4 |
| | 5~50인 미만 | (235) | 26.0 | 22.6 | 13.6 | 13.6 | 10.6 | 1.7 | 11.9 |
| | 50~100인 미만 | (4) | 25.0 | 0.0 | 25.0 | 50.0 | 0.0 | 0.0 | 0.0 |
| | 100~200인 미만 | (2) | 50.0 | 0.0 | 0.0 | 0.0 | 0.0 | 0.0 | 50.0 |
| | 200~300인 미만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0.0 |
| 매출 규모 | 10억 미만 | (61) | 31.1 | 24.6 | 3.3 | 11.5 | 11.5 | 0.0 | 18.0 |
| | 10~50억 미만 | (143) | 29.4 | 19.6 | 12.6 | 14.0 | 10.5 | 2.1 | 11.9 |
| | 50~100억 미만 | (47) | 23.4 | 29.8 | 21.3 | 10.6 | 10.6 | 0.0 | 4.3 |
| | 100~500억 미만 | (41) | 26.8 | 24.4 | 19.5 | 12.2 | 9.8 | 2.4 | 4.9 |
| | 500~1,000억 미만 | (2) | 0.0 | 0.0 | 50.0 | 50.0 | 0.0 | 0.0 | 0.0 |
| | 1,000억 이상 | (2) | 50.0 | 0.0 | 0.0 | 0.0 | 0.0 | 0.0 | 50.0 |

(수원시로 이전을 고려하지 않은 기업 : n=296, 단위 : %)

7. (관외) 중과세 제도 개선 완화가 기업활동에 주는 영향

- 현재 수원시가 추진 중인 중과세 제도 개선 완화에 대해 기업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매우 + 대체로)라는 응답 57.3%, ‘보통이다’ 42.3%,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0.3%

그림 4-11 | (관외) 종과세 제도 개선 완화가 기업활동에 주는 영향



(수원시 관외 기업 : n=300, 단위 : %)

표 4-14 | (관외) 종과세 제도 개선 완화가 기업활동에 주는 영향

| 구분 | 사례수 |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종합 | | | 평균 (5점) | |
|-------|-------------|--------------------|------|--------------------|-------------------|-------|------|------|---------|-----|
| | | | | | | 부정영향 | 보통 | 긍정영향 | | |
| 전체 | (300) | 0.3 | 42.3 | 48.3 | 9.0 | 0.3 | 42.3 | 57.3 | 3.7 | |
| 설립년도 | 2000년 이전 | (57) | 1.8 | 45.6 | 40.4 | 12.3 | 1.8 | 45.6 | 52.6 | 3.6 |
| | 2001~2010년 | (108) | 0.0 | 44.4 | 45.4 | 10.2 | 0.0 | 44.4 | 55.6 | 3.7 |
| | 2011~2020년 | (132) | 0.0 | 39.4 | 53.8 | 6.8 | 0.0 | 39.4 | 60.6 | 3.7 |
| | 2021년 이후 | (3) | 0.0 | 33.3 | 66.7 | 0.0 | 0.0 | 33.3 | 66.7 | 3.7 |
| 기업형태 | 소기업 | (146) | 0.7 | 47.3 | 48.6 | 3.4 | 0.7 | 47.3 | 52.1 | 3.5 |
| | 중기업 | (154) | 0.0 | 37.7 | 48.1 | 14.3 | 0.0 | 37.7 | 62.3 | 3.8 |
| 업종 | 제조업 | (135) | 0.0 | 39.3 | 52.6 | 8.1 | 0.0 | 39.3 | 60.7 | 3.7 |
| | 비제조업 | (165) | 0.6 | 44.8 | 44.8 | 9.7 | 0.6 | 44.8 | 54.5 | 3.6 |
| 법인유형 | 영리법인 | (300) | 0.3 | 42.3 | 48.3 | 9.0 | 0.3 | 42.3 | 57.3 | 3.7 |
| 종사자수 | 5인 미만 | (55) | 0.0 | 58.2 | 41.8 | 0.0 | 0.0 | 58.2 | 41.8 | 3.4 |
| | 5~50인 미만 | (238) | 0.4 | 39.1 | 50.4 | 10.1 | 0.4 | 39.1 | 60.5 | 3.7 |
| | 50~100인 미만 | (4) | 0.0 | 50.0 | 25.0 | 25.0 | 0.0 | 50.0 | 50.0 | 3.8 |
| | 100~200인 미만 | (2) | 0.0 | 0.0 | 0.0 | 100.0 | 0.0 | 0.0 | 100.0 | 5.0 |
| | 200~300인 미만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4.0 |
| 매출 규모 | 10억 미만 | (61) | 1.6 | 52.5 | 42.6 | 3.3 | 1.6 | 52.5 | 45.9 | 3.5 |
| | 10~50억 미만 | (146) | 0.0 | 41.1 | 50.7 | 8.2 | 0.0 | 41.1 | 58.9 | 3.7 |
| | 50~100억 미만 | (47) | 0.0 | 38.3 | 55.3 | 6.4 | 0.0 | 38.3 | 61.7 | 3.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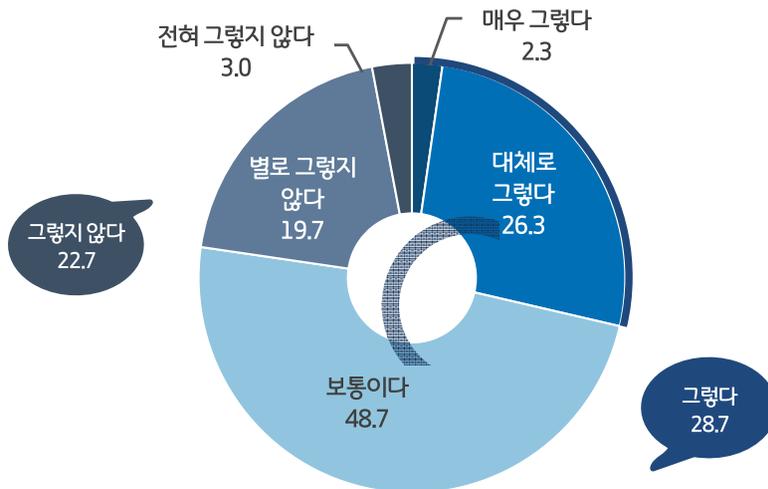
| | | | | | | | | | |
|---------------|------|-----|------|-------|-------|-----|------|-------|-----|
| 100~500억 미만 | (42) | 0.0 | 40.5 | 40.5 | 19.0 | 0.0 | 40.5 | 59.5 | 3.8 |
| 500~1,000억 미만 | (2)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4.0 |
| 1,000억 이상 | (2) | 0.0 | 0.0 | 0.0 | 100.0 | 0.0 | 0.0 | 100.0 | 5.0 |

(수원시 관외 기업 : n=300, 단위 : %)

8. (관외) 종과세 제도 개선 완화시 촉매제 가능성

- 종과세 제도 완화 시 수원으로 이전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매우 + 대체로) 28.7%, ‘보통이다’ 48.7%, ‘그렇지 않다’(전혀 + 별로) 22.7%
- 종사자 수 5인 미만(21.8%), 매출 규모 10억 미만(24.6%) 소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그림 4-12 | (관외) 종과세 제도 개선 완화시 촉매제 가능성



(수원시 관외 기업 : n=300, 단위 : %)

표 4-15 | (관외) 종과세 제도 개선 완화시 촉매제 가능성

| 구분 | 사례수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종합 | | | 평균 (5점) | |
|------|------------|-----------|-----------|------|---------|--------|--------|------|------|---------|-----|
| | | | | | |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 |
| 전체 | (300) | 3.0 | 19.7 | 48.7 | 26.3 | 2.3 | 22.7 | 48.7 | 28.7 | 3.1 | |
| 설립년도 | 2000년 이전 | (57) | 5.3 | 15.8 | 47.4 | 28.1 | 3.5 | 21.1 | 47.4 | 31.6 | 3.1 |
| | 2001~2010년 | (108) | 0.0 | 23.1 | 48.1 | 26.9 | 1.9 | 23.1 | 48.1 | 28.7 | 3.1 |
| | 2011~2020년 | (132) | 3.8 | 18.9 | 50.0 | 25.0 | 2.3 | 22.7 | 50.0 | 27.3 | 3.0 |
| | 2021년 이후 | (3) | 33.3 | 0.0 | 33.3 | 33.3 | 0.0 | 33.3 | 33.3 | 33.3 | 2.7 |
| 기업형태 | 소기업 | (146) | 2.7 | 19.9 | 50.7 | 26.0 | 0.7 | 22.6 | 50.7 | 26.7 | 3.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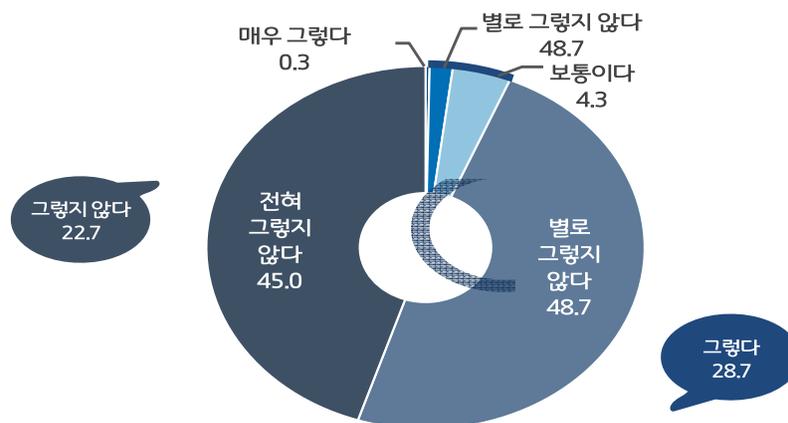
| | | | | | | | | | | | |
|-------|---------------|-------|------|------|------|-------|------|------|------|-------|-----|
| | 중기업 | (154) | 3.2 | 19.5 | 46.8 | 26.6 | 3.9 | 22.7 | 46.8 | 30.5 | 3.1 |
| 업종 | 제조업 | (135) | 3.0 | 19.3 | 46.7 | 27.4 | 3.7 | 22.2 | 46.7 | 31.1 | 3.1 |
| | 비제조업 | (165) | 3.0 | 20.0 | 50.3 | 25.5 | 1.2 | 23.0 | 50.3 | 26.7 | 3.0 |
| 법인유형 | 영리법인 | (300) | 3.0 | 19.7 | 48.7 | 26.3 | 2.3 | 22.7 | 48.7 | 28.7 | 3.1 |
| 종사자수 | 5인 미만 | (55) | 5.5 | 16.4 | 60.0 | 18.2 | 0.0 | 21.8 | 60.0 | 18.2 | 2.9 |
| | 5~50인 미만 | (238) | 2.1 | 20.2 | 47.1 | 28.2 | 2.5 | 22.3 | 47.1 | 30.7 | 3.1 |
| | 50~100인 미만 | (4) | 0.0 | 50.0 | 0.0 | 25.0 | 25.0 | 50.0 | 0.0 | 50.0 | 3.3 |
| | 100~200인 미만 | (2) | 50.0 | 0.0 | 50.0 | 0.0 | 0.0 | 50.0 | 50.0 | 0.0 | 2.0 |
| | 200~300인 미만 | (1) | 0.0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4.0 |
| 매출 규모 | 10억 미만 | (61) | 4.9 | 19.7 | 59.0 | 16.4 | 0.0 | 24.6 | 59.0 | 16.4 | 2.9 |
| | 10~50억 미만 | (146) | 2.7 | 20.5 | 44.5 | 29.5 | 2.7 | 23.3 | 44.5 | 32.2 | 3.1 |
| | 50~100억 미만 | (47) | 0.0 | 23.4 | 48.9 | 25.5 | 2.1 | 23.4 | 48.9 | 27.7 | 3.1 |
| | 100~500억 미만 | (42) | 2.4 | 14.3 | 47.6 | 31.0 | 4.8 | 16.7 | 47.6 | 35.7 | 3.2 |
| | 500~1,000억 미만 | (2) | 0.0 | 0.0 | 50.0 | 50.0 | 0.0 | 0.0 | 50.0 | 50.0 | 3.5 |
| | 1,000억 이상 | (2) | 50.0 | 0.0 | 50.0 | 0.0 | 0.0 | 50.0 | 50.0 | 0.0 | 2.0 |

(수원시 관외 기업 : n=300, 단위 : %)

9. (관외) 종과세 제도 개선시 수원시 내 신규법인 설립/지점설치 의향

- 종과세 제도 개선 시 수원시에 신규법인 설립 또는 지점을 설치할 의향에 대해 ‘그렇다’ (매우 + 대체로) 2.0%, ‘보통이다’ 4.3%, ‘그렇지 않다’(전혀 + 별로) 93.7%
- 대부분의 기업이 종과세 제도 개선으로 인해 신규법인 설립이나 지점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

그림 4-13 | (관외) 종과세 제도 개선시 수원시 내 신규법인 설립/지점설치 의향



(수원시 관외 기업 : n=300, 단위 : %)

표 4-16 | (관외) 중과세 제도 개선시 수원시 내 신규법인 설립/지점설치 의향

| 구분 | 사례수 | 전혀 그렇 지 않다 | 별로 그렇 지 않다 | 보통 이다 | 대체 로 그렇 다 | 매우 그렇 다 | 종합 | | | 평균 (5점) | |
|-------|---------------|---------------------|---------------------|----------|--------------------|---------------|---------------|-------|---------|------------|-----|
| | | | | | | | 그렇 지 않다 | 보통 | 그렇 다 | | |
| 전체 | (300) | 45.0 | 48.7 | 4.3 | 1.7 | 0.3 | 93.7 | 4.3 | 2.0 | 1.6 | |
| 설립년도 | 2000년 이전 | (57) | 63.2 | 28.1 | 7.0 | 1.8 | 0.0 | 91.2 | 7.0 | 1.8 | 1.5 |
| | 2001~2010년 | (108) | 36.1 | 58.3 | 2.8 | 1.9 | 0.9 | 94.4 | 2.8 | 2.8 | 1.7 |
| | 2011~2020년 | (132) | 43.9 | 50.0 | 4.5 | 1.5 | 0.0 | 93.9 | 4.5 | 1.5 | 1.6 |
| | 2021년 이후 | (3) | 66.7 | 33.3 | 0.0 | 0.0 | 0.0 | 100.0 | 0.0 | 0.0 | 1.3 |
| 기업형태 | 소기업 | (146) | 42.5 | 52.7 | 3.4 | 1.4 | 0.0 | 95.2 | 3.4 | 1.4 | 1.6 |
| | 중기업 | (154) | 47.4 | 44.8 | 5.2 | 1.9 | 0.6 | 92.2 | 5.2 | 2.6 | 1.6 |
| 업종 | 제조업 | (135) | 47.4 | 48.1 | 1.5 | 2.2 | 0.7 | 95.6 | 1.5 | 3.0 | 1.6 |
| | 비제조업 | (165) | 43.0 | 49.1 | 6.7 | 1.2 | 0.0 | 92.1 | 6.7 | 1.2 | 1.7 |
| 법인유형 | 영리법인 | (300) | 45.0 | 48.7 | 4.3 | 1.7 | 0.3 | 93.7 | 4.3 | 2.0 | 1.6 |
| 종사자수 | 5인 미만 | (55) | 34.5 | 61.8 | 1.8 | 1.8 | 0.0 | 96.4 | 1.8 | 1.8 | 1.7 |
| | 5~50인 미만 | (238) | 47.5 | 46.2 | 4.6 | 1.7 | 0.0 | 93.7 | 4.6 | 1.7 | 1.6 |
| | 50~100인 미만 | (4) | 25.0 | 25.0 | 25.0 | 0.0 | 25.0 | 50.0 | 25.0 | 25.0 | 2.8 |
| | 100~200인 미만 | (2) | 50.0 | 50.0 | 0.0 | 0.0 | 0.0 | 100.0 | 0.0 | 0.0 | 1.5 |
| | 200~300인 미만 | (1) | 10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0.0 | 1.0 |
| 매출 규모 | 10억 미만 | (61) | 45.9 | 52.5 | 1.6 | 0.0 | 0.0 | 98.4 | 1.6 | 0.0 | 1.6 |
| | 10~50억 미만 | (146) | 44.5 | 48.6 | 4.1 | 2.7 | 0.0 | 93.2 | 4.1 | 2.7 | 1.7 |
| | 50~100억 미만 | (47) | 51.1 | 48.9 | 0.0 | 0.0 | 0.0 | 100.0 | 0.0 | 0.0 | 1.5 |
| | 100~500억 미만 | (42) | 35.7 | 45.2 | 14.3 | 2.4 | 2.4 | 81.0 | 14.3 | 4.8 | 1.9 |
| | 500~1,000억 미만 | (2) | 10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0.0 | 1.0 |
| | 1,000억 이상 | (2) | 50.0 | 50.0 | 0.0 | 0.0 | 0.0 | 100.0 | 0.0 | 0.0 | 1.5 |

(수원시 관외 기업 : n=300, 단위 : %)

10. (관외) 수원시 입지 위한 필요 및 개선사항

- 수원시 입지를 위한 필요 및 개선사항으로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 31건, 다음으로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노력 필요'(22건), '공장, 산업단지 등 생산시설 지원'(21건), '투자, 대출 등 자금지원 필요'(10건) 등의 순

표 4-17 | (관외) 수원시 입지 위한 필요 및 개선사항

| 구분 | 사례수 | % |
|---------------------------|-------|-------|
| 전체 | (300) | 100.0 |
|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 | (31) | 10.3 |
|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노력 필요 | (22) | 7.3 |
| 공장, 산업단지 등 생산시설 지원 | (21) | 7.0 |
| 투자, 대출 등 자금지원 필요 | (10) | 3.3 |
| 세제 혜택 필요 | (8) | 2.7 |
| 취득세/중과세 규제 완화 필요 | (7) | 2.3 |
| 교통편 등 인구유치 방안 필요 | (6) | 2.0 |
| 부동산 안정화 방안 필요 | (6) | 2.0 |
| 판로/상권 지원 필요 | (6) | 2.0 |
| 기술개발 지원 필요 | (2) | 0.7 |
| 경기 활성화 정책 필요 | (1) | 0.3 |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필요 | (1) | 0.3 |
| 인력 지원 필요 | (1) | 0.3 |
| 기타 | (1) | 0.3 |
| 없음/모름/무응답 | (203) | 67.7 |

(수원시 관외 기업 : n=300, 단위 : %)

11. 기업 운영 애로사항

- 현재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경영비용 증가'가 가장 높은 61.2%, 다음으로 '인건비 상승'(12.0%),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규제'(8.3%) 순

그림 4-14 | 기업 운영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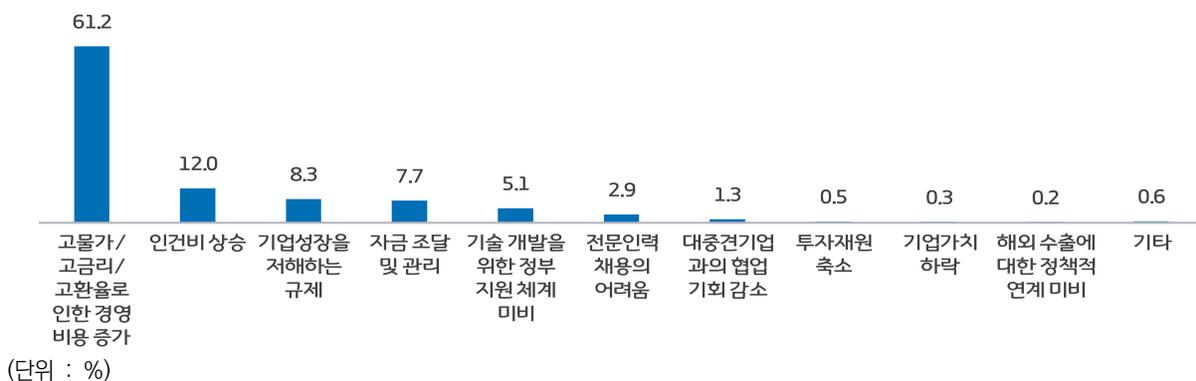


표 4-18 | 기업 운영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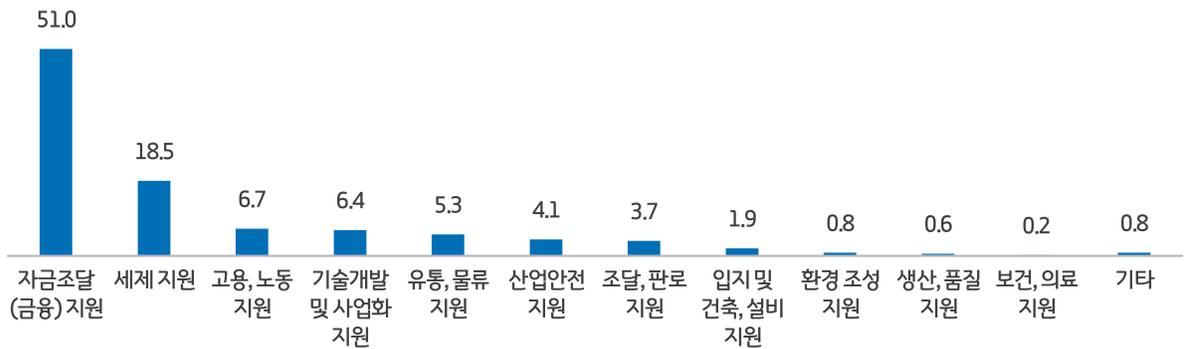
| 구분 | 사례수 |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경영비용 증가 | 인건비 상승 |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 자금달 및 관리 |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 체계 미비 | 전문인력 채용의 어려움 | 대견업과의 협업 기회 감소 | 투자원 축소 | 기업 가치 하락 | 해외 수출에 대한 정책적 연계 미비 | 기타 |
|----------|---------------|-------------------------|--------|----------------|----------|----------------------|--------------|----------------|--------|----------|---------------------|-----|
| 전체 | (627) | 61.2 | 12.0 | 8.3 | 7.7 | 5.1 | 2.9 | 1.3 | 0.5 | 0.3 | 0.2 | 0.6 |
| 주 사업장 위치 | 수원시 내 | (327) | 62.4 | 8.0 | 5.5 | 10.4 | 5.5 | 4.9 | 1.2 | 0.6 | 0.6 | 0.6 |
| | 수원시 외 | (300) | 60.0 | 16.3 | 11.3 | 4.7 | 4.7 | 0.7 | 1.3 | 0.3 | 0.0 | 0.7 |
| 수원시 내 위치 | 산업단지(델타플렉스) | (84) | 52.4 | 6.0 | 11.9 | 10.7 | 2.4 | 15.5 | 0.0 | 0.0 | 0.0 | 1.2 |
| | 지식산업센터 | (24) | 58.3 | 4.2 | 4.2 | 8.3 | 8.3 | 0.0 | 0.0 | 4.2 | 8.3 | 4.2 |
| | 개별 사업장 운영 | (219) | 66.7 | 9.1 | 3.2 | 10.5 | 6.4 | 1.4 | 1.8 | 0.5 | 0.0 | 0.5 |
| 설립년도 | 2000년 이전 | (103) | 64.1 | 9.7 | 11.7 | 4.9 | 3.9 | 3.9 | 1.9 | 0.0 | 0.0 | 0.0 |
| | 2001~2010년 | (219) | 60.3 | 14.2 | 7.3 | 8.7 | 3.7 | 4.1 | 0.9 | 0.5 | 0.0 | 0.5 |
| | 2011~2020년 | (291) | 62.5 | 11.3 | 7.9 | 7.2 | 6.2 | 1.7 | 1.4 | 0.3 | 0.3 | 0.7 |
| | 2021년 이후 | (14) | 28.6 | 7.1 | 7.1 | 21.4 | 14.3 | 0.0 | 0.0 | 7.1 | 7.1 | 0.0 |
| 기업형태 | 소기업 | (307) | 59.6 | 13.0 | 9.1 | 10.1 | 3.3 | 2.0 | 0.7 | 0.7 | 0.7 | 0.7 |
| | 중기업 | (320) | 62.8 | 10.9 | 7.5 | 5.3 | 6.9 | 3.8 | 1.9 | 0.3 | 0.0 | 0.6 |
| 업종 | 제조업 | (289) | 60.9 | 11.1 | 8.3 | 8.0 | 3.8 | 4.5 | 2.1 | 0.3 | 0.3 | 0.3 |
| | 비제조업 | (338) | 61.5 | 12.7 | 8.3 | 7.4 | 6.2 | 1.5 | 0.6 | 0.6 | 0.3 | 0.9 |
| 법인유형 | 영리법인 | (625) | 61.3 | 12.0 | 8.2 | 7.7 | 5.1 | 2.9 | 1.3 | 0.5 | 0.3 | 0.6 |
| | 기타 | (2) | 50.0 | 0.0 | 5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종사자수 | 5인 미만 | (142) | 66.9 | 12.0 | 7.0 | 9.9 | 1.4 | 0.0 | 0.0 | 1.4 | 0.7 | 0.7 |
| | 5~50인 미만 | (468) | 60.7 | 11.8 | 8.3 | 7.1 | 5.8 | 3.6 | 1.5 | 0.2 | 0.2 | 0.6 |
| | 50~100인 미만 | (13) | 38.5 | 15.4 | 7.7 | 7.7 | 23.1 | 7.7 | 0.0 | 0.0 | 0.0 | 0.0 |
| | 100~200인 미만 | (2) | 0.0 | 50.0 | 5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200~300인 미만 | (2) | 0.0 | 0.0 | 50.0 | 0.0 | 0.0 | 0.0 | 50.0 | 0.0 | 0.0 | 0.0 |
| 매출 규모 | 10억 미만 | (135) | 60.7 | 17.0 | 4.4 | 11.9 | 2.2 | 1.5 | 0.0 | 1.5 | 0.7 | 0.0 |
| | 10~50억 미만 | (304) | 60.5 | 11.2 | 7.9 | 7.9 | 7.2 | 2.3 | 1.6 | 0.0 | 0.3 | 1.0 |
| | 50~100억 미만 | (95) | 69.5 | 5.3 | 12.6 | 6.3 | 2.1 | 2.1 | 0.0 | 0.0 | 1.1 | 1.1 |
| | 100~500억 미만 | (84) | 57.1 | 14.3 | 9.5 | 2.4 | 6.0 | 7.1 | 3.6 | 0.0 | 0.0 | 0.0 |
| | 500~1,000억 미만 | (6) | 50.0 | 0.0 | 16.7 | 0.0 | 0.0 | 16.7 | 0.0 | 16.7 | 0.0 | 0.0 |
| | 1,000억 이상 | (3) | 33.3 | 33.3 | 33.3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단위 : %)

12. 정책적 지원 필요사항

- 사업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으로 '자금조달(금융) 지원'이 51.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세제 지원'(18.5%) 등 금융 관련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확인

그림 4-15 | 정책적 지원 필요사항



(단위 : %)

표 4-19 | 정책적 지원 필요사항

| 구분 | 사례수 | 자금조달(금융) 지원 | 세제 지원 | 고용, 노동 지원 |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유통, 물류 지원 | 산업안전 지원 | 조달, 판로 지원 | 입지 및 건축, 설비 지원 | 환경 조성 지원 | 생산, 품질 지원 | 보건, 의료 지원 | 기타 |
|----------|-------------|-------------|-------|-----------|---------------|-----------|---------|-----------|----------------|----------|-----------|-----------|-----|
| 전체 | (627) | 51.0 | 18.5 | 6.7 | 6.4 | 5.3 | 4.1 | 3.7 | 1.9 | 0.8 | 0.6 | 0.2 | 0.8 |
| 주 사업장 위치 | 수원시 내 | (327) | 52.0 | 21.7 | 4.6 | 7.6 | 4.0 | 4.9 | 2.1 | 0.6 | 0.6 | 0.6 | 0.9 |
| | 수원시 외 | (300) | 50.0 | 15.0 | 9.0 | 5.0 | 6.7 | 3.3 | 5.3 | 3.3 | 1.0 | 0.7 | 0.7 |
| 수원시 내 위치 | 산업단지(델타플렉스) | (84) | 36.9 | 34.5 | 2.4 | 14.3 | 0.0 | 8.3 | 0.0 | 1.2 | 0.0 | 1.2 | 1.2 |
| | 지식산업센터 | (24) | 58.3 | 12.5 | 4.2 | 8.3 | 0.0 | 0.0 | 4.2 | 0.0 | 4.2 | 4.2 | 4.2 |
| | 개별 사업장 운영 | (219) | 57.1 | 17.8 | 5.5 | 5.0 | 5.9 | 4.1 | 2.7 | 0.9 | 0.0 | 0.5 | 0.5 |
| 설립년도 | 2000년 이전 | (103) | 42.7 | 23.3 | 5.8 | 7.8 | 4.9 | 5.8 | 2.9 | 4.9 | 1.9 | 0.0 | 0.0 |
| | 2001~2010년 | (219) | 53.9 | 19.6 | 5.5 | 4.6 | 6.8 | 4.6 | 2.3 | 0.5 | 0.9 | 0.5 | 0.9 |
| | 2011~2020년 | (291) | 52.6 | 16.2 | 7.9 | 6.5 | 4.5 | 3.4 | 5.2 | 1.7 | 0.3 | 0.7 | 0.3 |
| | 2021년 이후 | (14) | 35.7 | 14.3 | 7.1 | 21.4 | 0.0 | 0.0 | 0.0 | 7.1 | 0.0 | 7.1 | 0.0 |
| 기업형태 | 소기업 | (307) | 56.0 | 16.3 | 6.8 | 4.9 | 5.2 | 1.6 | 4.6 | 2.0 | 0.7 | 0.7 | 1.0 |
| | 중기업 | (320) | 46.3 | 20.6 | 6.6 | 7.8 | 5.3 | 6.6 | 2.8 | 1.9 | 0.9 | 0.6 | 0.6 |

| | | | | | | | | | | | | | | |
|-------|---------------|-------|------|------|-----|-------|------|------|-----|------|-----|-----|-----|-----|
| 업종 | 제조업 | (289) | 54.0 | 17.3 | 6.9 | 6.6 | 3.8 | 3.5 | 5.2 | 0.3 | 0.7 | 0.7 | 0.3 | 0.7 |
| | 비제조업 | (338) | 48.5 | 19.5 | 6.5 | 6.2 | 6.5 | 4.7 | 2.4 | 3.3 | 0.9 | 0.6 | 0.0 | 0.9 |
| 법인유형 | 영리법인 | (625) | 51.2 | 18.6 | 6.7 | 6.1 | 5.3 | 4.2 | 3.7 | 1.9 | 0.8 | 0.6 | 0.2 | 0.8 |
| | 기타 | (2) | 0.0 | 0.0 | 0.0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종사자수 | 5인 미만 | (142) | 54.9 | 18.3 | 7.7 | 4.2 | 7.0 | 1.4 | 2.8 | 0.7 | 0.0 | 1.4 | 0.0 | 1.4 |
| | 5~50인 미만 | (468) | 50.4 | 18.8 | 6.4 | 6.2 | 4.7 | 4.9 | 4.1 | 2.1 | 1.1 | 0.4 | 0.2 | 0.6 |
| | 50~100인 미만 | (13) | 46.2 | 7.7 | 7.7 | 23.1 | 7.7 | 7.7 | 0.0 | 0.0 | 0.0 | 0.0 | 0.0 | 0.0 |
| | 100~200인 미만 | (2) | 0.0 | 50.0 | 0.0 | 0.0 | 0.0 | 0.0 | 0.0 | 50.0 | 0.0 | 0.0 | 0.0 | 0.0 |
| | 200~300인 미만 | (2) | 0.0 | 0.0 | 0.0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매출 규모 | 10억 미만 | (135) | 60.7 | 16.3 | 6.7 | 3.7 | 3.7 | 0.0 | 4.4 | 1.5 | 0.7 | 1.5 | 0.0 | 0.7 |
| | 10~50억 미만 | (304) | 53.3 | 13.5 | 6.6 | 6.9 | 6.9 | 3.9 | 4.9 | 1.3 | 1.3 | 0.0 | 0.0 | 1.3 |
| | 50~100억 미만 | (95) | 40.0 | 31.6 | 7.4 | 6.3 | 1.1 | 8.4 | 0.0 | 3.2 | 0.0 | 1.1 | 1.1 | 0.0 |
| | 100~500억 미만 | (84) | 42.9 | 26.2 | 7.1 | 8.3 | 3.6 | 6.0 | 2.4 | 2.4 | 0.0 | 1.2 | 0.0 | 0.0 |
| | 500~1,000억 미만 | (6) | 16.7 | 0.0 | 0.0 | 16.7 | 50.0 | 16.7 | 0.0 | 0.0 | 0.0 | 0.0 | 0.0 | 0.0 |
| | 1,000억 이상 | (3) | 33.3 | 33.3 | 0.0 | 0.0 | 0.0 | 0.0 | 0.0 | 33.3 | 0.0 | 0.0 | 0.0 | 0.0 |

(단위 : %)

제3절 인식조사 종합

- 현재 수원시에 위치한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알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 또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규제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기업은 응답 기업의 3.4% 정도이며 그 중 절반이 종과세 및 세금 부담에 따른 피해가 컸던 것으로 응답
- 관내기업 중 3.4%가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고려한 적이 있으며 그 이유로 ‘종과세 외의 규제’(36.4%)가 가장 높고, 이전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수원시의 높은 시장 수요’(52.2%)
- 관외 기업 중 수원시에서 기업활동을 할 의향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5.7% 수준
- 수원시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전국에 납품하기에 수원시가 용이해서’(23.5%), 하고 싶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현재 확보한 고객을 놓치기 어려워서’(34.6%)
- 수원시로 이전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기업은 1.3% 수준, 수원시로 이전을 고려한 가장 큰 이유는 ‘수원시의 인구 및 시장 수요’(75.0%), 고려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수원시의 높은 지가’(28.4%)
- 수원시가 추진 중인 종과세 제도 개선 완화에 대해 기업활동에 ‘긍정 영향’에 대한 응답은 57.3%, ‘보통이다’ 42.3%, ‘부정 영향’ 0.3% 순
- 종과세 제도 완화 시 수원 이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그렇다’ 28.7%, ‘보통이다’ 48.7%, ‘그렇지 않다’ 22.7%
- 종과세 제도 개선 시 수원에 신규법인 설립 또는 지점 설치 의향에 대해 ‘그렇다’ 2.0%, ‘보통이다’ 4.3%, ‘그렇지 않다’ 93.7%
- 수원시 입지를 위한 필요 및 개선사항으로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최다 응답
- 현재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경영비용 증가’가 61.2%, 다음으로 ‘인건비 상승’이 12.0% 등
- 사업체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 중 51.0%가 ‘자금조달(금융) 지원, 다음으로 ‘세제 지원’(18.5%) 등으로 금융 관련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

제5장

수도권 규제완화 방향 및 전략

제1절 규제완화 필요성

제2절 규제완화 방향

제3절 규제완화 전략

제5장 수도권 규제완화 방향 및 전략

제1절 규제완화 필요성

- 수도권규제를 통한 균형발전 목표 오히려 역효과
 - 수도권 성장 제한, 국가 성장 제한, 국가경쟁력 약화
- 수도권 규제는 젊은 층이 모여 있는 수도권의 삶의 질 악화. 일자리 불안, 주거불안으로 출생률 저하, 지역경제 악화, 국가 성장 잠재력·지속가능성장 저해
- 지방세인 취·등록세 종과세 규제는 중앙정부 규제로 과세 자주권 침해 + 인접지역·업종 간 형평성의 문제
- 수도권 내 권역구분 기초지자체 기준. 비수도권 광역지역과 비교 어려운 비대칭적 행정권역 미고려
 - 광역과 기초지자체, 광역과 광역 내부규제 대상지역간 차이 고려되지 않은 비대칭적 규제
- 수도권 규제는 국토종합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장기 방향성과 상충
 - 국토이용에 관한 계획간 방향성 일치, 개선 방향성 일치, 효율적 국토이용에 관한 계획의 패러다임 전환과 통합관리, 일관성 있는 목표 설정 필요
 - 각 계획 방향성에 수도권계획 포함, 규제완화 필요성, 규제 문제 언급되고 있으나 완화 또는 폐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미흡, 적극 행정 기피
 - (예시) 제 5차 국토종합계획 주요 정책과제 중 일부 :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촉진,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상생발전, 지방대도시권의 중추거점 및 연계기능 강화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없이는 현실화 불가능한 목표

표 5-1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특징

| 구분 | 과거 계획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 | |
|------|---------|------------------|----------------|--------|
| 정책주도 | 중앙정부 주도 | 지역 주도 | | |
| 정책목표 | 지역특화발전 | 지역 간 균형발전 |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 지역특화발전 |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2019), 제4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2018~2022) 2면

-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수도권광역도시계획)의 역할과 기능 중첩
 - 수도권광역도시계획, 국토종합계획 등과 계획 중복.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존치 이유에 대한 재검토 필요

그림 5-1 | 수도권정비계획의 성격 및 위상



자료 : 홍사흠(2024), “수도권정비계획의 현황과 이슈” 경인행정학회 수원시정연구원세션 발표자료

표 5-2 | 수도권정비계획의 성격과 위상

| 구분 | 목적 | 주요내용 |
|-------------------|--|--|
| 국토종합계획 (국토기본법) | 국토를 이용, 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 추구 •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다양한 국가와의 연계 강화 • 개발과 환경 보전을 아우르는 조화로운 추진 • 남북한의 화합을 바탕으로 한 통일된 국토 실현 |
| 수도권 정비계획법 |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 및 개발 사업의 체계적 관리 • 수도권 지역의 인구 안정화 위한 대책 마련 • [계획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 추진 • 환경 보전 및 효율적 관리 강화 • 계획 실행과 사후 관리 체계 확립 • 자원 조달 방안의 명확화와 효율적 운영 • 광역시설 정비와 확충을 통한 인프라 개선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공간 구조 조정과 효율적 개편 권역별 정비 전략 구체화 공장 및 학교의 총량제 시행 및 관리 |
| 광역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인접한 2개 이상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전망을 제시하고 이들 도시의 성장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기능별 분담사항 도로, 철도, 고속전철, 운하,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 |
| 도 종합계획 (국토기본법) | 도는 보유한 유형 및 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하며 보존하기 위해, 장기적·단기적 정책 방향과 지침을 수립하고 추진.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공간계획 업무의 획기적 발전 추진 개별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중복 사업을 방지 지속가능한 친환경 국토 환경의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계획 및 정책 수립 국토공간계획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을 실현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고 자연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관리 및 행위제한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한강수계(상수원) 관리와 주민지원을 통한 수질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변구역의 지정과 체계적인 관리 및 행위 제한을 포함한 계획 수립과 실행 오염총량제를 통한 체계적 오염 관리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 운영 안정적인 자원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 |
|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특별조치법 |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 사회, 문화, 관광 등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전전략 사업에 관한 내용 관련기반시설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 지방의 발전 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지방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 개발권역의 지정 및 구체적 계획 수립 개발 촉진 지구의 선정과 실행 특정 지역의 지정과 개발 진행 민간 개발자 주도의 지역 개발 사업 시행 지역 종합 개발 지구의 지정 및 개발 |
|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 인구와 산업의 집중으로 인해 환경 오염 문제가 다각화, 심화되었거나 또는 가시적으로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개선 방안 모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대책지역 지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 특별대책지역 지정으로 인한 효과(예: 특정 시설 설치 제한 등) 특별대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

자료 : 이창무(2016), "저출산고령화시대 수도권규제에 대한 재평가와 개선방향" 한국경제연구원 대외세미나 발표자료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기본법」 법률(제19430호)

□ 국가 전체의 성장 위한 규제 완화 필요

- 한정된 자원에서 전체 파이를 늘리고 전체 경쟁력 높여야 지방 경쟁력도 향상
- 국제화, 글로벌 시대 이전에 수립된 40년 된 규제 수정 및 국제경쟁력 향상 위한 win-win 전략 필요

제2절 규제완화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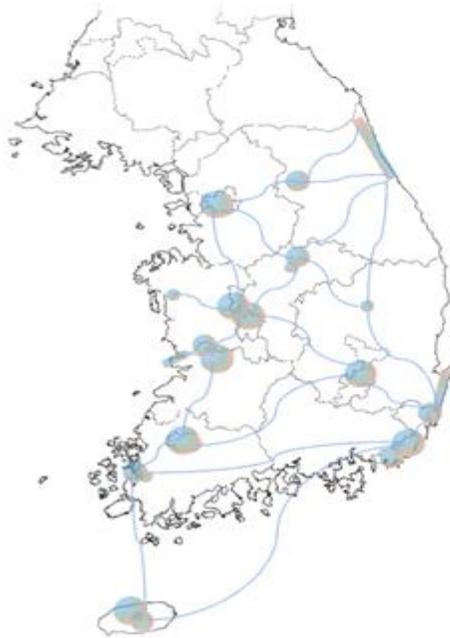
□ 광역중심 광역도시계획으로 전환

- 출생률, 주택가격, 고용률 : 비수도권 광역이 과밀억제권역(기초)보다 과열. 수도권, 비수도권 이분법적 시각 버려야
- 수정법 및 수도권정비계획 내용을 국토종합계획 및 광역도시계획, 하부법률에 반영
 - 광역도시계획(수도권포함)을 국토종합계획 다음 계획의 위상으로 넣고 그 하부계획을 추진
 - 세부계획은 광역시도 및 시군자치구 종합계획을 통해 실시 : 지방자치 실현, 지역의 기능 강화
- 광역도시계획 : 인접한 두 개 이상의 특별광역시, 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대해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거나 시와 군의 기능을 상호 연계하여 적절한 성장 관리를 도모(최상위 계획)
 -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마창진권, 광양만권, 전주권, 청주권, 전남서남권, 제주권(11개 권역)

□ 광역중심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 ~ 2040) 주요 내용

- 규제 풀고 광역중심 성장확장 → 균형발전

그림 5-2 |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 국토 구상



자료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재구성

- 국토균형은 인구정책, 교통 및 인프라 정책, 지역특화정책 등 지역성장, 상생전략으로 전환
 - 공항, 항만, 철도 등 핵심 교통수단의 적절한 분배 통한 국내외 접근권 개선
 - 1일 생활권 아닌 반일, 3시간 생활권 등 이동시간, 접근성 제고 시 수도권 고집 이유 없음
 - 외국인정책, 다문화정책, 해외 우수학생 유치정책 강화
 - 지역별특화사업(관광, 농업, 문화, 축산) 강화
 - 대학의 경우 지역별 특화학과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균형정책 고민. 수정법은 건어내도 됨
 - 수도권 개발이익금을 비수도권 개발 사업에 매칭 활용, 상생발전기금 조성 등 상생전략 마련
- 균형발전 패러다임 변화 실천 :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지역지원 확대, 규제는 축소
 - 규제가 아닌 지원 통한 균형, 지역분권을 통한 자생적 성장과 균형 추진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방향성과도 일치

그림 5-3 |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자료 : 제5차 국토종합계획

- 서울 외곽 과밀억제권역, 베드타운 형성에 따른 인구과밀, 서비스 산업 집중. 산업규제 아닌 고용 창출형 산업도시 전략화(중심지 화)로 주변지역 확장 도모
 - 주변 충청, 강원권으로 베드타운·서비스산업 확산, 인구 확산 도모
- 규제완화로 상향평준화. 수도권 약화 시 비수도권 약화. 글로벌 시각의 지역개발정책 고려
 - 비수도권 기업의 수도권 기업과의 거래 비중 고려, IMF 시기 사례 등
- 단계적 규제완화, 권역 축소(서울에서 40km² → 20km², 권역기준 재편 등) → 규제 폐지 추진

제3절 규제완화 전략

- 단계적 접근, 궁극적으로는 규제개혁, 상생전략으로 전환
 - 취득세 증과세 완화 추진, 공장총량 완화 추진, 행위규제 완화 추진 등 세부 단계별 완화 이후 전체 규제개혁, 상생전략(분권형 정책, 상생기금 등)으로 전환 추진

표 5-3 | 수도권 규제완화 전략

| 구분 | 주요 목적 | 세부 내용 |
|-----|------------------------------------|---|
| 1단계 | 취등록세(도세) 증과세 완화 추진 (도와 협의 → 중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연면적 초과분만 증과세 • 기업 규모별 증과세 완화(대/중/소 규모별, 소규모 증과세 제외 등) • 신도시 수용법인 증과세 완화 • 증과제외업종 본점 신증축시 증과 미적용(4차 혁명 산업 등) |
| 2단계 | 공장총량 완화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물량 재배정 • 노후 산단 공장 면적 10% 범위 내 확대 |
| 3단계 | 행위 규제 완화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지역 내 공장 증설 시 규제 완화 • 반환공여구역에서 지정되는 산업단지는 공업지역에서 제외 • 대규모 개발 시 대학 신설 허용 |

- 1단계 지방세법 완화 추진(안) :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 규제의 불합리성
 -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건축물 또는 공장이 있는 자가 기존의 건축물 또는 공장을 처분하고 과밀억제권역에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인구유입이나 경제성 집중효과를 새롭게 유발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일괄적인 규제로 취득세 증과
 - 증과제외업종에 해당하더라도 본점 신·증축에 대한 증과세와 공장 신·증설에 대한 증과세(지방세법 제13조제1항) 적용

표 5-4 |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 유형 | 법령 | 증과세 물건 | 취득세 | |
|---------------|-----------------|-----------------|--------------------------|---|
| | | | 현행 | 개정안 |
| 법인 본점 신·증축 | 지방세법 제13조제1항 |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 표준세율 + 증과기준세율(2%)의 2배 | 기존 건축물 및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표준세율 + 증과기준세율(2%)의 2배적용 |
| 공장 신·증설 | 지방세법 제13조제1항 | 부동산 차량·기계장비 | 표준세율 + 증과기준세율(2%)의 2배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현안 연구를 위한 설문서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시정 발전을 위한 각종 주제의 종합적체계적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수원시의 중장기적인 미리비전을 제시하는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현안 연구” 추진을 위해 기업인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관내/외 법인 및 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수원시 과밀억제권역 규제에 관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로 인하여 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탐색하고 기업 성장 및 신규 기업유치를 위한 규제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에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개인의 개인정보 및 개별 사항은 일체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8월



본 조사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수행기관 : 수원시정연구원
- 조사관련 문의: 양은순 연구위원

임채실 위촉연구원(031-220-8077, lcs3697@suwon.re.kr)

4-2. 수원시로 이전을 고려한 경험이 없으실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 ① 증과세로 인한 부담
- ② 수원시의 높은 지가
- ③ 증과세 외의 규제(과밀부담금, 공장 총량 규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등)
- ④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지원 체계 부족
- ⑤ 기타 ()

※ 다음은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증과세 완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기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속해있어 수원시에 입주한 기업에 부담을 가중하는 증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수원시에서는 이와 같은 과도한 규제가 기업이 활동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여,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및 증과세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코자 합니다.

5.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증과세 제도 개선 완화가 기업활동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②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⑤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6. 증과세 제도 개선 완화가 수원시로 이전·전입하기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7. 증과세 제도가 개선이 된다면 수원시에 신규법인 설립·지점설치 등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8. 기업의 수원시 입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혹은 개선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은 공통 문항에 관한 설문입니다.

1. 귀사가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 ①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경영비용 증가
- ②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지원 체계 미비
- ③ 기업가치 하락
- ④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 ⑤ 대중견기업과의 협업기회 감소
- ⑥ 법률, 회계, 세무 정보 부족
- ⑦ 인건비 상승
- ⑧ 자금 조달 및 관리
- ⑨ 전문인력 채용의 어려움
- ⑩ 투자재원 축소
- ⑪ 해외 수출에 대한 정책적 연계 미비
- ⑫ 기타 ()

2. 귀사의 발전을 위하여 현재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 ① 고용, 노동 지원
- ②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③ 보건, 의료 지원
- ④ 법률 지원
- ⑤ 산업안전 지원
- ⑥ 생산, 품질 지원
- ⑦ 세제 지원
- ⑧ 유통, 물류 지원
- ⑨ 입지 및 건축, 설비 지원
- ⑩ 자금조달(금융) 지원
- ⑪ 조달, 판로 지원
- ⑫ 환경 조성 지원
- ⑬ 기타 ()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성실한 응답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별 주요 현황

부록 표-1 | 인구

| 행정구역별 | 총인구수(명) | | 증감 (2022-1992) |
|-------|---------|-----------|-------------------|
| | 1992 | 2022 | |
| 수원시 | 696,322 | 1,190,964 | 494,642 |
| 성남시 | 645,311 | 922,518 | 277,207 |
| 의정부시 | 237,811 | 463,724 | 225,913 |
| 안양시 | 539,775 | 548,228 | 8,453 |
| 부천시 | 687,751 | 790,128 | 102,377 |
| 광명시 | 337,842 | 287,945 | △49,897 |
| 고양시 | 257,654 | 1,076,535 | 818,881 |
| 과천시 | 72,243 | 78,137 | 5,894 |
| 구리시 | 124,770 | 188,701 | 63,931 |
| 군포시 | 130,877 | 266,213 | 135,336 |
| 의왕시 | 97,641 | 160,221 | 62,580 |
| 하남시 | 95,112 | 326,059 | 230,947 |

자료 : 통계청

부록 표-2 | 1인당 GRDP

| 행정구역별 | 1인당 GRDP(단위: 만 원) |
|-------|-------------------|
| 수원시 | 3,031 |
| 성남시 | 5,432 |
| 의정부시 | 1,614 |
| 안양시 | 3,388 |
| 부천시 | 2,227 |
| 광명시 | 2,754 |
| 고양시 | 2,114 |
| 과천시 | 6,885 |
| 구리시 | 1,871 |
| 군포시 | 2,721 |
| 의왕시 | 2,542 |
| 하남시 | 2,651 |

주 : 2021년을 기준년도로 함

자료 : 경기통계

부록 표-3 | 실업률

| 행정구역별 | 2023.1/2 | 2023.2/2 |
|-------|----------|----------|
| 수원시 | 3.6 | 4.4 |
| 성남시 | 3.1 | 3.5 |
| 의정부시 | 2.8 | 2.8 |
| 안양시 | 2.7 | 3.2 |
| 부천시 | 4 | 4 |
| 광명시 | 3.9 | 3.2 |
| 고양시 | 3.1 | 3.7 |
| 과천시 | 2.6 | 2.7 |
| 구리시 | 2.7 | 2.4 |
| 군포시 | 2.6 | 4.3 |
| 의왕시 | 2 | 2.7 |
| 하남시 | 1.9 | 2.4 |
| 평균 | 2.9 | 3.3 |

자료 : 통계청

부록 표-4 | 도시공업지역 면적

| 행정구역별 | 도시공업지역 면적(단위: 천㎡) |
|-------|-------------------|
| 수원시 | 4.118 |
| 성남시 | 1.744 |
| 안양시 | 3.23 |
| 부천시 | 4.537 |
| 광명시 | 0.697 |
| 과천시 | - |
| 군포시 | 2.602 |
| 의왕시 | 1.132 |
| 하남시 | 0.217 |
| 의정부시 | 0.368 |
| 고양시 | 0.1 |
| 구리시 | - |

자료 : 통계청(2021년 자료)

부록 표-5 | 사업체 수 비중

| 자치 단체 | 2022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체 수 합계(비중) | 농업, 임업 및 어업 | 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조설 공급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 및 창고업 | 숙박 및 음식업 | 정보 신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수원시 | 112,282(100.0) | 0 | 0 | 4.9 | 0.1 | 0.1 | 8.3 | 25.3 | 9.7 | 14.4 | 2.2 | 1.1 | 5.7 | 4.6 | 2.7 | 0.1 | 5.6 | 3.2 | 2.9 | 9.1 |
| 성남시 | 97,596(100.0) | 0 | 0 | 6.2 | 0.1 | 0.1 | 5.7 | 26.8 | 8.9 | 12.4 | 5 | 1.1 | 6.2 | 5.8 | 2.3 | 0.1 | 5.4 | 3.3 | 2.8 | 7.6 |
| 의정부시 | 41,403(100.0) | 0 | 0 | 4.5 | 0 | 0.2 | 10.1 | 26.5 | 11.1 | 14.2 | 1.4 | 1.2 | 4.4 | 3.4 | 2.2 | 0.2 | 5 | 3.6 | 2.8 | 9.4 |
| 안양시 | 65,722(100.0) | 0 | 0 | 7.9 | 0.1 | 0.1 | 5.9 | 27.2 | 11.6 | 11.3 | 3.6 | 1.1 | 5.9 | 6 | 2.2 | 0.1 | 4.7 | 2.7 | 2.4 | 7.2 |
| 부천시 | 88,728(100.0) | 0 | 0 | 14.9 | 0 | 0.2 | 6.5 | 24.5 | 10.9 | 12 | 2.2 | 0.9 | 4.6 | 3.2 | 2.3 | 0.1 | 3.9 | 2.8 | 2.6 | 8.3 |
| 광명시 | 26,394(100.0) | 0 | 0 | 8.9 | 0 | 0.2 | 5.4 | 28.1 | 12.8 | 11.6 | 2.6 | 0.6 | 5.1 | 3.4 | 1.9 | 0.2 | 5.6 | 3.5 | 2.4 | 7.7 |
| 고양시 | 111,401(100.0) | 0.1 | 0 | 7.4 | 0.2 | 0.2 | 7.2 | 29.6 | 9.7 | 10.9 | 3.5 | 0.8 | 4.9 | 4.2 | 2.5 | 0.1 | 5.4 | 2.7 | 2.8 | 8 |
| 과천시 | 6,218(100.0) | 0.1 | 0 | 2.3 | 0.1 | 0.3 | 4 | 33.7 | 9.2 | 9.6 | 3.9 | 0.8 | 6.2 | 5.1 | 2 | 0.5 | 6.1 | 3.1 | 7.4 | 5.6 |
| 구리시 | 21,435(100.0) | 0 | 0 | 5.1 | 0 | 0.1 | 8.9 | 28.3 | 11.4 | 12 | 2.5 | 1 | 4.3 | 5.5 | 2.3 | 0.1 | 4.8 | 3 | 2.4 | 8.2 |
| 군포시 | 28,217(100.0) | 0 | 0 | 14.1 | 0 | 0.2 | 6.3 | 22 | 14.4 | 11.2 | 2.5 | 0.4 | 5.2 | 3.6 | 2.2 | 0.1 | 4.9 | 2.9 | 2.5 | 7.5 |
| 의왕시 | 13,983(100.0) | 0.1 | 0 | 10.1 | 0.1 | 0.3 | 5.1 | 25.4 | 14.8 | 10.6 | 3.1 | 0.5 | 5.5 | 4.7 | 1.8 | 0.2 | 4.9 | 3.1 | 2.6 | 7.2 |
| 하남시 | 34,456(100.0) | 0 | 0 | 8.4 | 0.1 | 0.2 | 5.5 | 32.9 | 8.5 | 9.8 | 3.6 | 0.5 | 7.7 | 4.9 | 2.4 | 0.1 | 4.4 | 2.6 | 2.2 | 6.3 |

자료 : 경기통계

부록 표-6 | 종사자 수 비중

| 자치 단체 | 2022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종사자 수 합계(비중) | 농업, 임업 및 어업 | 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조설 공급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 및 창고업 | 숙박 및 음식업 | 정보 신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수원시 | 490,829(100.0) | 0.1 | 0 | 8.1 | 0.1 | 0.3 | 6.4 | 13.6 | 4.4 | 9.7 | 1.9 | 2.8 | 3.2 | 13.1 | 7.7 | 4.4 | 8 | 10.4 | 1.8 | 4 |
| 성남시 | 537,223(100.0) | 0 | 0 | 7.5 | 0.3 | 0.3 | 6 | 14.2 | 3.2 | 7.2 | 16.8 | 2.7 | 3.4 | 10.8 | 5.7 | 2.3 | 6.5 | 8.5 | 1.5 | 3.2 |
| 의정부시 | 138,204(100.0) | 0 | 0 | 4.4 | 0.5 | 0.5 | 6.6 | 16.8 | 5.9 | 11.3 | 1.4 | 3.4 | 3.1 | 3.7 | 4.5 | 5.1 | 9.3 | 16.5 | 2 | 4.9 |
| 안양시 | 276,105(100.0) | 0 | 0 | 12.5 | 0.1 | 0.5 | 8.2 | 15.8 | 4.7 | 7.6 | 4.6 | 2.8 | 3.5 | 10.6 | 6.8 | 2.3 | 7.1 | 8 | 1.4 | 3.4 |
| 부천시 | 319,919(100.0) | 0 | 0 | 20.6 | 0.1 | 0.5 | 7 | 15 | 4.8 | 8.5 | 2 | 3 | 3.1 | 3.2 | 6.4 | 2 | 6.7 | 11.3 | 1.6 | 4.1 |
| 광명시 | 107,968(100.0) | 0 | 0 | 15.2 | 0.1 | 0.4 | 7.5 | 17.7 | 5.9 | 8.8 | 2.2 | 1.8 | 3.4 | 3.6 | 4.8 | 3.5 | 8 | 11.3 | 2.4 | 3.5 |
| 고양시 | 380,772(100.0) | 0.1 | 0 | 8.7 | 0.2 | 0.6 | 7.3 | 19.7 | 6.7 | 9.4 | 2.9 | 2.1 | 3.6 | 4 | 4.3 | 2.2 | 8.3 | 12.7 | 2.4 | 4.6 |
| 과천시 | 39,143(100.0) | 0.1 | 0 | 1.2 | 0 | 1.1 | 7 | 13.2 | 2.6 | 6.2 | 5.6 | 1.5 | 2.7 | 14.1 | 3.5 | 14.1 | 5.8 | 5.5 | 13 | 2.7 |
| 구리시 | 66,859(100.0) | 0 | 0 | 5.4 | 0.1 | 0.5 | 6.6 | 21.2 | 6.7 | 9.6 | 1.5 | 3.4 | 3 | 4.2 | 6 | 3.4 | 7.4 | 14 | 2 | 5 |
| 군포시 | 119,151(100.0) | 0 | 0 | 25.2 | 0.1 | 0.4 | 5.8 | 12.3 | 9.7 | 7.5 | 1.6 | 0.7 | 2.7 | 4.4 | 6.6 | 1.7 | 6.8 | 9.3 | 1.8 | 3.5 |
| 의왕시 | 61,545(100.0) | 0 | 0 | 16.5 | 0.1 | 0.5 | 5.8 | 15.1 | 8.1 | 7.8 | 4.5 | 0.6 | 2.8 | 10.9 | 3.7 | 4 | 6.1 | 8.6 | 1.5 | 3.2 |
| 하남시 | 117,531(100.0) | 0.1 | 0 | 10.5 | 0.3 | 0.5 | 7.5 | 28.1 | 5 | 8.9 | 3.2 | 0.8 | 4.3 | 4.4 | 3.9 | 2.3 | 6.5 | 8.3 | 2 | 3.6 |

자료 : 경기통계

참고문헌

국문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019). 제4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2018~2022). 2면.
- 국토연구원. (2007). 프랑스 수도권 광역계획(SDRIF 2030)의 성격과 시사점, 국토논단 통권308호(2007년 6월)
- 과밀억제권역 협의체 자료
- 석호영. (2023). 수도권 정비계획에 관한 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104, 208-212.
- 안근원. (2008).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수도권 규제완화 사례조사. 국토연구원.
- 이상대. (2008). 주요 선진국 수도권 규제정책의 전환과 우리나라 시사점. 경기연구원
- 이상대. (2018). 일본의 규제개혁 사례와 우리나라 수도권정책 및 특구전략의 전환. 경기연구원.
- 이윤규. (2007).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이창무. (2016). 저출산고령화시대 수도권규제에 대한 재평가와 개선방향. 한국경제연구원 대외세미나 발표자료.
- 이창호. (2013). 수도권규제 관련 해외 정책 동향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일본 국토교통성. (2006)
- 일본 국토교통성 현지 방문 배포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2015). 최근 일본의 수도권 발전정책 동향과 시사점
- 제5차 국토종합계획
- 최민아. (2011). 프랑스 도시연대및재생에관한법률(SRU법)의 연대(Solidarité) 개념의 구체화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46권 제7호.
- 허문구 외. (2022). 지방소멸시대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방안: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홍사흠. (2024). 수도권정비계획의 현황과 이슈. 경인행정학회 수원시정연구원세션 발표자료.
- KDI. (2023). 확대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KDI 연중기획 인포그래픽 203년 01호.

신문기사 / 웹사이트 / 통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기본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D%86%A0%EA%B8%B0%EB%B3%B8%EB%B2%95>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A7%91%EC%A0%81%ED%99%9C%EC%84%B1%ED%99%94%EB%B0%8F%EA%B3%B5%EC%9E%A5%EC%84%A4%EB%A6%BD%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https://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0266&lsRvsGubun=all>

경기통계. (2023). **경기도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추계결과 보고서**. https://stat.gg.go.kr/statgg/kr/dataMng/PublicationForm.html?pub_seq=563

경기통계. (2023). **산업중분류, 종사자 규모 및 시군구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https://stat.gg.go.kr/statgg/kr/dataMng/PublicationForm.html?pub_seq=542

국가기록원. (2017). **수도권 규제시책**. <https://www.archives.go.kr>

보건복지부. (2024). **2022년 보육통계**. <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

박진용. (2024.04.21.). **'규제피해...스타트업 본사, 해외로 간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D8007EUIIM>

통계청. (2024).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총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3A01S&conn_path=I3

통계청. (2024). **시군구/출생아수, 합계출산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3&conn_path=I3

통계청. (2024).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C81&conn_path=I3

통계청. (2024). **용도지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10&tblId=DT_210021010&vw_cd=MT_ZTITLE&list_id=210_21002_2001_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통계청. (2024). **재정자립도(시도/시/군/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921&conn_path=I3

통계청. (2024).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conn_path=I3

한국 수출입은행. (202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 <https://www.data.go.kr/data/3040164/fileData.do>

한국부동산원. (2024). **(월) 평균단위매매가격 아파트**. http://www.reb.or.kr/r-one/portal/stat/easyStatPage/A_2024_00061.do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24). **국제 주요국 1인당 GDP**. ecos.bok.or.kr/#/Short/6ee9aa

Choose Paris Region. <https://www.welcometofrance.com/en/region/paris-region>

IMD「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WEF「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World Bank. (2024). **Fertility rate, total (births per woman)**. https://genderdata.worldbank.org/en/indicator/sp-dyn-tfrt-in?view=trend&geos=WLD_KOR_FRA_JPN_GBR

연구책임자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강태욱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임채실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SRI-전략 2024-0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현안 연구

A Research on current issues in the metropolitan overcrowding control zone

발행인 김성진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24년 11월 30일

발행 2024년 11월 30일

ISBN 979-11-6819-185-3(95320)

© 2024 수원시정연구원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양은순. 202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현안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